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2호)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29호)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46호)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46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27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24호)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8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0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85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02호)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07호)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35호)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6호)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06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84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04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39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67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84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99호)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57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67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42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92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31호)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96호)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4호)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3호)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39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55호)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87호)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87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13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38호)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09호)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16호)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79호)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4호)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1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Ⅰ. 개요 ····· 1

【김성원의원안】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1

【엄태영(Ⅰ)의원안】

1. 제안경위 ····· 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

【주철현의원안】

1. 제안경위 ····· 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3

【정성호의원안】

1. 제안경위 ····· 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

3. 참고사항 ····· 5

【조인철의원안】

1. 제안경위 ····· 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6

【이만희(Ⅰ)의원안】

1. 제안경위 ····· 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7

【강명구의원안】

1. 제안경위 ····· 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8

【이만희(Ⅱ)의원안】

1. 제안경위 ····· 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9

3. 참고사항 ····· 10

【김예지의원안】

1. 제안경위 ····· 1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11

【이만희(Ⅲ)의원안】

1. 제안경위 ····· 1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12

3. 참고사항 ····· 13

【엄태영(Ⅱ)의원안】

1. 제안경위 ····· 1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14

【장철민의원안】

1. 제안경위 ····· 15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15

3. 참고사항 ····· 15

【박정의원안】

1. 제안경위 ····· 1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16

3. 참고사항 ····· 17

【최수진의원안】

1. 제안경위 ····· 1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18

【이만희(Ⅳ)의원안】

1. 제안경위 ····· 20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0

【이만희(Ⅴ)의원안】

1. 제안경위 ····· 2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1

【이만희(Ⅵ)의원안】

1. 제안경위 ····· 2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2

【윤준병(Ⅰ)의원안】

1. 제안경위 ····· 2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3

【이원택의원안】

1. 제안경위 ····· 2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6

【이만희(Ⅶ)의원안】

1. 제안경위 ····· 2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7

【엄태영(Ⅲ)의원안】

1. 제안경위 ····· 2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8

【윤준병(Ⅱ)의원안】

1. 제안경위 ····· 2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9

【윤준병(Ⅲ)의원안】

1. 제안경위 ····· 3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32

【윤준병(Ⅳ)의원안】

1. 제안경위 ····· 35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35

【조인철(Ⅱ)의원안】

1. 제안경위 ····· 3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37

【최보윤의원안】

1. 제안경위 ····· 3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38

【엄태영(Ⅳ)의원안】

1. 제안경위 ····· 3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39

【김태선의원안】

1. 제안경위 ····· 40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0

【안도걸의원안】

1. 제안경위 ····· 4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1

【김선교의원안】

1. 제안경위 ····· 4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2

【김주영의원안】

1. 제안경위 ····· 4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3

【박상웅(Ⅰ)의원안】

1. 제안경위 ····· 4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4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 45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5

【한병도의원안】

1. 제안경위 ····· 4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6

【허성무의원안】

1. 제안경위 ····· 4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7

【박상웅(Ⅱ)의원안】

1. 제안경위 ····· 4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8

【김기표의원안】

1. 제안경위 ····· 4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49

【박정하의원안】

1. 제안경위 ····· 5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51

【박상웅(Ⅲ)의원안】

1. 제안경위 ····· 5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52

Ⅱ. 검토의견 ····· 54

1.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 54

가.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8조) ····· 54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일몰기한 연장(엄태영Ⅰ·윤준병Ⅰ·김선교의원안 제8조제1항) ····· 54

2) 교환·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이만희Ⅵ·윤준병Ⅰ·김선교의원안 제8조제2항) ····· 59

3)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Ⅰ·김선교의원안 제8조제3항) ····· 63

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및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주철현·윤준병Ⅰ·엄태영Ⅳ의원안 제9조) ····· 67

다.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주철현·윤준병Ⅰ의원안 제10조) ····· 72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이만희Ⅴ·윤준병Ⅰ의원안 제13조제2항) ····· 77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이만희Ⅳ·Ⅶ·윤준병Ⅰ·이원택의원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85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94

가.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추가(최보윤의원안 제17조) ····· 94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김주영·김태선·윤준병Ⅱ의원안 제18조 등) ····· 101

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Ⅱ의원안 제22조) ····· 121

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기준인 다자녀의 나이 상향조정(조인철의원안 제22조의2) ····· 128

마.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확대(김성원의원안 제29조) ····· 135

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Ⅱ의원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 145

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신설(최수진의원안 제33조의4 신설) ····· 158

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엄태영Ⅱ·윤준병Ⅱ·한병도의원안 제36조의3) ····· 166

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엄태영Ⅲ·한병도·윤준병Ⅱ·김기표의원안 제36조의5) ····· 175

차. 기부금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강명구의원안 제40조의4 신설) ··· 180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191

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Ⅳ의원안 제46조) ····· 191

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Ⅳ의원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198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208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54조) ····· 208

5.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212

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4조) ····· 212

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5조의2) ····· 222

다.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이만희Ⅲ의원안 제75조의3) ····· 228

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윤준병Ⅲ의원안 제75조의4) ····· 237

마.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이만희Ⅰ·Ⅱ·윤준병Ⅲ·박상웅Ⅲ의원안 제75조의5) ····· 241

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 · 253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의2) ····· 264
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의3) · 268
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허성무의원안 제78조의4 신설) · 280
차.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특례(박상웅Ⅰ의원안 제79조의2) ····· 286
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도걸·박정하의원안 제80조의2) ····· 291
타. 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조인철Ⅱ의원안 제80조의3 신설) ····· 299
파. 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설(박상웅Ⅱ의원안 제80조의3 신설) ····· 304
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81조) ····· 311

6.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318

가. 지방공사가 취득하는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등(정춘생의원안 제85조의2 및 제177조의2) ····· 318

7. 지방소득세 특례 ····· 329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김예지의원안 제138조의2 신설) ····· 329

나. 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박정의원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등) ····· 337

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장철민의원안 제164조 삭제) · 344

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주철현·윤준병 I 의원안 제167조) ····· 351

8. 기타 제도개선 사항 ····· 358

가. 지방세지출예산서 작성 등(정성호의원안 제5조 및 제181조의2 신설) ·· 358

Ⅰ. 개요

【김성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 2.

다. 회 부 일 : 2025. 1. 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엄태영(Ⅰ)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15.

다. 회 부 일 : 2025. 1. 1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주철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 23.

다. 회 부 일 : 2025. 1. 2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정성호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5. 2. 6.

다. 회 부 일 : 2025. 2. 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신설 등).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조인철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2. 13.

다. 회 부 일 : 2025. 2. 1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이만희(Ⅰ)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7.

다. 회 부 일 : 2025. 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강명구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8.

다. 회 부 일 : 2025. 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이만희(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7.

다. 회 부 일 : 2025. 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예지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9.

다. 회 부 일 : 2025. 2. 20.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이만희(Ⅲ)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20.

다. 회 부 일 : 2025. 2. 2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엄태영(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20.

다. 회 부 일 : 2025. 2. 2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장철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26.

다. 회 부 일 : 2025. 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정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2. 26.

다. 회 부 일 : 2025. 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수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2. 28.

다. 회 부 일 : 2025. 3. 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원시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며 이후 주택이 분양될 때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는 잠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적체 현상,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이만희(Ⅳ)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6.

다. 회 부 일 : 2025. 3. 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이만희(Ⅴ)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7.

다. 회 부 일 : 2025. 3. 10.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이만희(Ⅵ)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0.

다. 회 부 일 : 2025. 3. 1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윤준병(Ⅰ)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3. 10.

다. 회 부 일 : 2025. 3. 1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나.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2항).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50% 경감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3항).

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그리고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조).

마.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

지 등 부동산,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아.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7조).

【이원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7.

다. 회 부 일 : 2025.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이만희(Ⅶ)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7.

다. 회 부 일 : 2025.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엄태영(Ⅲ)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8.

다. 회 부 일 : 2025. 3. 1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윤준병(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부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들은 두터운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5항).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7항).

마.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윤준병(Ⅲ)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4조제1항).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4조).

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2).

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4).

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5).

바.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2).

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3).

자. 이전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새 및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

【윤준병(Ⅳ)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조인철(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최보윤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6.

다. 회 부 일 : 2025. 3. 2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엄태영(Ⅳ)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7.

다. 회 부 일 : 2025. 3. 2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김태선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의료·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재건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

【안도걸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안도걸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김선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8.

다. 회 부 일 : 2025. 4. 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김주영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10.

다. 회 부 일 : 2025. 4. 1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박상웅(Ⅰ)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14.

다. 회 부 일 : 2025. 4. 15.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각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지장물의 취득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철거예정 지장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으로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함.

이에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한병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허성무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박상웅(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김기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3.

다. 회 부 일 : 2025. 4. 2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 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

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박정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박상웅(Ⅲ)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9.

다. 회 부 일 : 2025. 4. 30.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가.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8조)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일몰기한 연장(엄태영Ⅰ·윤준병Ⅰ·김선교의원안 제8조제1항)

개정안들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엄태영Ⅰ·김선교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 ---------- ---------- ---------- ---------- ---------- ---------- ---------- ---------- --2028년 12월 31일-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 ---------- ---------- ---------- ---------- ---------- ---------- ---------- ---------- 2030년----------

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엄태영Ⅰ·김선교의원안)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준병Ⅰ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1]에 따른 '농업생산기반[2] 개량사업' 및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2)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의미함(「농어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엄태영(Ⅰ)·김선교의원안은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윤준병(Ⅰ)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보임.

<엄태영Ⅰ·김선교·윤준병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엄태영Ⅰ·김선교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8①)	감면 대상자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농지확대 개발사업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3])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농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장려할 필요

촌정비법」 제2조제6호)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가 있다는 점, 생산량 증대 차원에서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 1,900만원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현황(제8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86	100,962
2022	87	131,220
2023	85	126,28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에 대한 면제는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엄태영(Ⅰ)·김선교의원안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3.57억원(연평균 1.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4],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8억원(연평균 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5].

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1. 21.)

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2) 교환·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이만희Ⅵ·윤준병Ⅰ·김선교의원안 제8조제2항)

개정안들은 「농어촌정비법」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6]하거나 농업진흥지역[7]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 행	이만희Ⅵ·김선교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생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는	② ----------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② ---------- ---------- ---------- ---------- ---------- ---------- ---------- ----------2030년---------- ----------. -- ---------- ----------

6) 농지의 "**교환**"은 자신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의 "**분합**"은 자신의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농지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것으로 각각의 농지를 필지별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교환한 후 합병하는 것을 의미함(『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구본풍 등, 삼일인포마인, 2025, p162).

7)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구역으로 구성됨(「농지법」 제28조)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8]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9]에 따라 교환·분합하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이만희(Ⅵ)·김선교의원안은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윤준병(Ⅰ)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8) **「농어촌정비법」**

제43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할·합병(이하 "교환·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만희Ⅵ·윤준병Ⅰ·김선교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만희Ⅵ·김선교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8②)	감면 대상자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제외)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농어촌정비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②농업진흥지역 내 교환·분합하는 농지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10])		
	일몰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이는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3억원임.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8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57	71,993
2022	48	45,619
2023	10	11,06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만희(Ⅵ)[11]·김선교의원안[12]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14억원(연평균 0.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9억원(연평균 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3].

1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1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1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3)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Ⅰ·김선교의원안 제8조제3항)

개정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14] 또는 임업후계자[15]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취득하는 보전산지[16]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 행	김선교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생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③ ----------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 ---------- ----------	③ ---------- ---------- ---------- ---------- ---------- ---------- ---------- -------2030년----- ---------- ---------- ---------- ---------- ---------- ---------- ---------- ----------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 ---------- ---------- ---------- ----------2030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6) "**보전산지**"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됨(「산지관리법」 제4조)

현행법은 독림가로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17]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선교의원안은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윤준병(Ⅰ)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김선교·윤준병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선교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감면 (§8③)	감면 대상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 ② 보전산지 (99만㎡이하)		
	감면 내용	① 취득세 100% ② 취득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임업후계자 등의 임야 교환·분합 및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의 관리 및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

17) 단, 99만 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하고 있음.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0억 5,800만원임.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8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642	1,433,615
2022	532	1,145,033
2023	445	1,058,064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선교의원안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34.5억원(연평균 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18],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7.3억원(연평균 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9].

1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및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주철현·윤준병Ⅰ·엄태영Ⅳ의원안 제9조)

개정안들은 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② 출원[20]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등, ③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현 행	주철현·엄태영Ⅳ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21]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 ---------- ---------- ---------- ------2028년 12월 31일----------.	② ---------- ---------- ---------- ---------- ---------- --------2030년---------- ----------.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	③ ---------- ---------- ---------- ---------- ----------	③ ---------- ---------- ---------- ---------- ----------

1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20) "**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구본풍 등, 삼일인포마인, 2025, pp171-172).

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 ------2030년------ ---------- -----.
부 칙 (주철현·엄태영Ⅳ의원안)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준병Ⅰ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

2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22]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주철현·엄태영(Ⅳ)의원안은 해당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윤준병(Ⅰ)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영세어민을 지원하고 출원으로 인한 어업권 등 취득 유인을 제공하여 어업·양식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주철현·윤준병Ⅰ·엄태영Ⅳ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주철현·엄태영Ⅳ 의원안	윤준병Ⅰ 의원안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9②·③)	감면 대상자	자영어민[23] 등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② ⅰ) 출원으로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ⅱ) 어업권·양식업권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新면허 받거나 면허 변경		
	감면 내용	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②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최근 어촌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어촌경제의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24],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2)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함(「수산업법」 제17조제1항).

23) "자영어민"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어업을 주로 하는 자로서 거주지요건, 어업외 소득 요건 등을 갖춘 자를 의미함.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5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은 연 1억원임.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현황(제9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21	2,246	2,697,361	46,157	825,844	34,093	120,458
2022	1,953	2,740,241	43,937	787,241	32,434	113,217
2023	2,194	2,165,827	44,740	824,743	33,083	118,721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3,300만원,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원임.

24) 2023년 기준, 어촌인구는 2017년 대비 약 10만명 감소하였으며, 전국 고령화율이 18.9% 인 것에 반해 어촌 고령화율은 24.3%에 달하며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어업 생산량과 어가소득의 정체로 인해 어촌경제의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음(「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5, pp21-20, pp26-29, p37).

<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감면 현황(제9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2	19,950	445	10,140
2022	12	59,168	429	9,612
2023	9	22,814	474	10,577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소형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철현[25]·엄태영Ⅳ[26]의원안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73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2억원(연평균 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또한,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2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2. 19.)

2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4. 16.)

총 116.1억원(연평균 2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연평균 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7].

다.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주철현·윤준병Ⅰ의원안 제10조)

개정안들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현 행	주철현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 ---------- ---------- ---------- ----------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 ---------- ---------- ---------- ---------- ----------

2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	----------2028년 12월 31일----------. 1. ~ 5. (현행과 같음)	----------2030년----------. 1. ~ 5. (현행과 같음)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①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②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 ③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④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⑤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을 받는 농어업인에게 등록면허세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주철현의원안은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윤준병(Ⅰ)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농어업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철현·윤준병 |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주철현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 등기 감면 (§10①)	감면 대상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감면 내용	등록면허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농업협동조합 등이 융자 시 부담하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지속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84억원임.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감면 현황(제10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290,299	26,027,202
2022	200,843	16,289,207
2023	155,933	13,017,403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철현의원안에 따라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624억원(연평균 2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28],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042억원(연평균 20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9].

2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2. 19.)

2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이만희Ⅴ·윤준병Ⅰ의원안 제13조제2항)

개정안은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각종 농어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농지, 시설물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이만희Ⅴ·윤준병Ⅰ의원안 제13조제2항),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함)에 따른 조성토지 처분특례[30]에 의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이만희Ⅴ의원안 제13조제2항제1호의3).

현 행	이만희Ⅴ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028년 12월 31일----------.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030년---- ----------

30) **「농어촌공사법」**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 「농지법」 제11조·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1의2.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1의2.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의3. ---------- ---------- ---------- ----------취득·소유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각각 경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매매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 등 각종 농어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현행법상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13②)>

구분(호)	감면대상	감면율
1호	농지매매사업·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1호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취득세 50% 재산세 75%
1호의3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2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매입하여 취득·임대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3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4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4호의2	농지 재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5호	농지시장 안정·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또한, 「농어촌공사법」제44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31]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조성농지의 처분 특례[32]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제1호의3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동 특례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있음.

윤준병(Ⅰ)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이만희(Ⅴ)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조성농지의 처분 특례에 따라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31)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32) **「농어촌공사법」**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이만희Ⅴ·윤준병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만희Ⅴ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3②)	감면 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1호의3 제외	1호의3 제외	
		농어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현행과 같음)	
		1호의3	1호의3	
		조성토지 처분특례로 취득하는 부동산	조성토지 처분특례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1호의3 제외	1호의3 제외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과 같음)	
		1호의3	1호의3	
		취득세 50%	취득세·**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33]을 고려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각종 농어업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33) **「농어촌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조성농지의 처분 특례에 따라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어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4] 재산세를 감면하는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조세형평성[35]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48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4억원 임.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13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9,924	24,150,622	2,585	3,047,289
2022	9,799	26,152,658	2,588	2,646,157
2023	8,728	24,162,102	2,295	1,556,08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34) 동 조항 제1호의2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2호는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경우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세의 형평성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만희(Ⅴ)의원안에 따라 조성토지 처분특례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받은 이후 토지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 동 감면 특례는 2023년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성토지 처분특례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가 무상양여 받은 토지는 용도와 매각대금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36], 해당 토지를 활용하여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감면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만희(Ⅴ)의원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가하고 및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0.28억원(연평균 0.84억원), 재산세는 3년간 총 3.47억원(연평균 1.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37],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35억원(연평균 24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8].

---

36)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를 농어촌 체험공간 마련, 농어민의 휴식공간 마련 등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임.

3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24.)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이만희Ⅳ·Ⅶ·윤준병Ⅰ·이원택의원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들은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9] 및 유통자회사[40]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이만희Ⅳ·윤준병Ⅰ·이원택의원안 제15조제1항), ②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41](이하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함)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

---

3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39)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농산물 비축기지 운영 등 농산물 수급조절, 유통종사자 교육 등의 정부위탁 사업 등을 수행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40) 농림수협등이 운영하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 또는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대표적 예시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4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이만희Ⅶ·윤준병Ⅰ의원안 제15조제2항).

현 행	이만희Ⅳ·Ⅶ·이원택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30년 12월 31일---.	---------2030년---.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2028년 12월 31일----------.	②----------2030년---------.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또한, 동 조 제2항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42]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43]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이만희Ⅳ·이원택의원안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이만희Ⅶ의원안은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윤준병Ⅰ의원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42) 또한,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만희Ⅳ·Ⅷ·이원택·윤준병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만희Ⅳ·이원택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15①)	감면 대상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구분		현행	이만희Ⅷ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15②)	감면 대상자	지방농수산물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사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100% (100% 범위 조례 可) × 지자체 투자비율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5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9.3억원 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15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	159,295	114	916,461
2022	2	7,014	120	966,767
2023	-	-	121	921,25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9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310억원 임.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15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5	9,772	171	30,902,055
2022	5	9,626	172	32,410,614
2023	6	17,919,017	173	29,929,06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만희(Ⅳ)[44]·이원택[45]의원안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7.6억원(연평균 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6.1억원(연평균 9.2억원)

4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4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46].

또한, 이만희(Ⅶ)의원안에 따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925억원(연평균 30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47],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541.6억원(연평균 30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48].

4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4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4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가.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추가

(최보윤의원안 제17조)

개정안은 장애인[49]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 행	최보윤의원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 ----------. 1. ~ 4. (현행과 같음)

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신 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됨.
「장애인복지법」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면제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지방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구분	종류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6인승 이하)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개정안은 지방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0]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50)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최보윤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최보윤의원안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7①)	감면 대상자	장애인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2,000cc 이하·7~10인승 승용자동차 등	(현행과 같음)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신 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내용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100%	(현행과 같음)
	일몰 기한	~2027년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51], 태양광자동차[52], 하이브리드자동차[53], 수소전기자동차[54]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55] 중 에너지소비

51) "전기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

52) "태양광자동차"는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4호)

53)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5호)

54)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6호)

55)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효율기준, 저공해자동차기준, 기술기준 등이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56]한 자동차[57]를 의미하는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매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

(단위: 만 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기자동차	4.7	10.0	16.4	16.3	14.7
태양광자동차	-	-	-	-	-
하이브리드자동차	17.3	24.0	27.4	39.1	51.0
수소전기자동차	0.6	0.9	1.0	0.5	0.4
합계	22.6	34.9	44.8	55.9	66.1

※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배기량 기준으로 감면대상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58] 등을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57)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친환경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가 포함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

58) 한편, 행정안전부는 배기량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형 이하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법은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는 소비자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들이 있는 등[59] 고가의 자동차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내연기관 차량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미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60], 개정안에 따른 특례와 해당 특례를 중복

(2,000cc 미만)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해당 시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종별 규격 현황(승용자동차)>

요건	소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1,600cc이상 2,000cc미만	2,000cc 이상
규모 ① 길이 4.7m↓ ② 너비 1.7m↓ ③ 높이 2.0m↓	①·②·③ 모두 충족	①·②·③ 중 하나라도 소형 초과	①·②·③ 모두 초과

59) 테슬라 모델 X, 메르세데스벤츠 EQS350 등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75억원, 자동차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873억원 임.

<장애인의 보철·생활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황(제17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5,062	74,975,999	736,741	94,348,283
2022	38,876	70,952,424	702,392	88,654,062
2023	31,287	56,650,673	647,813	79,049,02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면대상에 포함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는 내연기관 차량과의 형평성, 친환경자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동차의 보급 추이, 그에 따른 감면 규모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김주영·김태선·윤준병Ⅱ의원안 제18조 등)

개정안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김주영·윤준병Ⅱ의원안 제18조),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윤준병Ⅱ의원안 제23조·제28조·제30조) 등이 고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것임(김태선·윤준병Ⅱ의원안 제27조).

현 행	김주영·김태선의원안	윤준병Ⅱ의원안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 ---------- ---------- ---------- ---------- ---------- ---------- ---------- ----------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 ---------- ---------- ---------- ---------- ---------- ---------- ---------- ----------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27년 12월 31일----------.	----------2030년----------.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2030년----------. ② ----------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 ---------- ------2030년------ ---------- ---.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 ---------- ---------- ---------- ---------- ---------- ---------- ---------- ----2027년 12월 31일 ----------.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 ---------- ---------- ---------- ---------- ---------- ---------- ---------- ----2030년-------- ----------.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②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 ---------- ---------- ---------- --------. 1. ---------- ---------- --------100분의 80 ---------- ---------- ----------.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2030년------ ----------.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 ---------- ---------- ---------- ---------- ---------- ----------2030년----------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③ (생 략)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2030년----------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김주영의원안)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태선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윤준병Ⅱ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61]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등 고유 사업[62]에 직접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는데, 김주영의원안은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윤준병(Ⅱ)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김주영·윤준병Ⅱ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주영의원안	윤준병Ⅱ의원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8)	감면 대상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25% 재산세 25%		
	일몰 기한	~2025년	~2027년	~203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자립 및 고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실적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800만원 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18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	-	2	49
2022	-	-	1	-
2023	-	-	1	-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Ⅱ)의원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63)64)].

6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64) 김주영의원안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연평균 1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 연평균 감면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8조, 제30조)

현행법은 ① 법률구조법인[65] 및 한국소비자원[66]이 그 고유업무[67][68]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제23조),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69]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사업[70]에 직접 사

65)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66)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67) **「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8)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한국산업인력공단[71]이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사업[72]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제28조),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3]이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사업 등[74]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제30조)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윤준병(Ⅱ)의원안은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윤준병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II의원안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감면 (§23·28·30)	감면 대상자	①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재산세 25%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취득세 25% 재산세 25%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득세 25% ① 취득세 25% 재산세 25%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28조·제30조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국민경제 발전, 독립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3,000만원이며, 제2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8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400만원임.

<법률구조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23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	359	49	44,636
2022	-	-	49	24,722
2023	-	-	49	22,852

<한국소비자원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23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6	53,625	34	36,494
2022	-	-	41	18,976
2023	-	-	41	17,404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8,0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30만원이고,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없으며, 제3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3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300만원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28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	-	5	1,665
2022	2	246,905	6	2,896
2023	-	-	5	2,487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28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	-	-	-
2022	-	-	-	-
2023	-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 감면 현황(제30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	40,943	3	13,650
2022	-	-	6	17,439
2023	-	-	4	9,110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Ⅱ)의원안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원(연평균 0.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0.6억원(연평균 0.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75].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0.35억원(연평균 0.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0.45억원(연평균 0.0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76]

(제27조)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 따른 근로복지공단[77]이 ①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

7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7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77)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리·유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사업[78]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②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사업 등[79]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은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김태선의원안은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Ⅱ)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8) 이는 「산재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임.

「산재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9) 이는 「산재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재활병원**에 대한 감면임.

「산재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김태선의원안은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태선·윤준병Ⅱ의원안의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현행</th><th>김태선의원안</th><th>윤준병Ⅱ의원안</th></tr>
<tr><td rowspan="6">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27①·②)</td><td>감면 대상자</td><td colspan="2">근로복지공단</td><td rowspan="5">(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3">감면 대상</td><td colspan="2">근로복지공단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td></tr>
<tr><td>①「산재보험법」§11①1호~5호, 6호, 7호 에 따른 사업</td><td rowspan="2">(현행과 같음)</td></tr>
<tr><td>②「산재보험법」§11①5호의2, 5호의3, ② 에 따른 사업</td></tr>
<tr><td rowspan="2">감면 내용</td><td>① 취득세 25%</td><td>① (현행과 같음)</td></tr>
<tr><td>②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염병전문병원 60%)</td><td>② 취득세 80%
재산세 80%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2">일몰 기한</td><td>① ~2025년</td><td>① ~2027년</td><td>① ~2030년</td></tr>
<tr><td>② ~2027년</td><td colspan="2">② (현행과 같음)</td></tr>
</table>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태선의원안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병원의 경영 상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재활병원 경영수지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무상태표	자산	8,610	9,091	9,087	10,620	15,331
	부채	6,169	6,335	6,493	6,174	11,242
	자본	2,441	2,755	2,594	4,445	4,089
손익계산서 (K-IFRS)	매 출	9,258	9,289	10,120	11,350	10,421
	매출원가	3,971	3,710	3,928	3,815	3,956
	영업이익	△524	△34	△380	918	394
	당기순이익	△353	702	△10	1,269	103

※ 자료: 근로복지공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현황>

구분		감면대상	현행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공공 보건의료 기관	1유형	지방의료원	75(85)	75(85)
	2유형	**산재·재활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	50(60)	50(60)
非공공 보건의료 기관	3유형	사립대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기관, 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	30(40)	50(60)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15(25)	25(3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율을 의미함
※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00만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6억원 임.

<근로복지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27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	135
2022	-	-
2023	-	-

<근로복지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27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	45	16	32,438
2022	1	29,851	25	387,886
2023	1	2,490	25	358,38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감면율 상향에 대해서는 산재·재활병원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직업복귀 촉진, 노동자 건강증진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2024년 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재활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검토하여 일몰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재설계 하였다는 점,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및 의무, 설립·관리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을 유형화하고 감면율을 차등 적용[80]한다는 점, 동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은 2027년 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80) 이와 관련해서는 전면의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현황” 참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태선의원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인상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4.2억원(연평균 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81)82)].

8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4. 15.)

82) 윤준병(Ⅱ)의원안의 경우 과거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개정안에 따라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계됨.

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Ⅱ의원안 제22조)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83]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84], 한센인 권익·증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85], 사회복지시설[86]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현 행	윤준병Ⅱ의원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2030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복지의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1.·2. (현행과 같음)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③ ---------- ---------- ---------- ---------- ---------- ---------- ---------- ---------- ---------- ---------- ---------- ----------2030년-------- ----------. ------ ---------- ---------- ----------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 ---------- ---------- ---------- ---------- ---------- ---------- ---------- ---------- ---------- ----------2030년----------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⑦ ---------- ---------- ---------- ---------- ---------- ---------- ---------- 2030년----------.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과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87]를 감면하고 있음(제1항 및 제3항).

또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제5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에 과세되는

83)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동복지법」 등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8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85)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이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함(「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86)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87)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 있음(제7항).

윤준병(Ⅱ)의원안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윤준병Ⅱ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Ⅱ의원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22)	감면 대상자	①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법인 또는 단체	
		③ 사회복지법인등	
		④ 사회복지시설 경영자	
	감면 대상	① ⅰ)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ⅱ) 설립·합병등기 (사회복지법인 限)	
		②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③ ⅰ)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ⅱ) 사회복지법인등의 사업소 등	
		④ ⅰ) 사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ⅱ)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감면 내용	① ⅰ)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ⅱ) 등록면허세 100%	
		② 취득세 및 재산세 25% (단, 입소자·이용자가 비용 부담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100% 및 재산세 50%)	
		③ ⅰ) 등록면허세 100% ⅱ)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소분 100% (단, 수익사업 제외)	
		④ ⅰ) 등록면허세 100% ⅱ) 주민세 사업소분 100%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사회복지법인등이 영유아,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여 사회복지 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22억원임.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22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2,099	3,987,231
2022	30,893	4,057,522
2023	53,024	28,671,764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Ⅱ)의원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348.9억원(연평균 269.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88].

8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기준인 다자녀의 나이 상향조정(조인철의원안 제22조의2)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24세---------- ---------- ---------- ---------- ---------- ---------- ---------- ----------24 세---------- ---------- ---------- ---------- ---------- ---------- ---------- ---------- ---------- ---------- ----------

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4세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	② ----------24세---------- ---------- ---------- ---------- ---------- ---------- ---------- ---------- ---------- ---------- ---------- ----------

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4세----------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고 함)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89](제22조의제1항 및 제2항).

89) 다만, 승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외하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1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양육하는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를 감면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이 공제됨.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① 자동차를 대체취득[90]하여 등록하는 경우, ②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91]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제22조의제3항)[92].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당초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였으나[93], 2024.12.31. 동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로 완

---

90)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91)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93)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되었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와 2명 양육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하게 되었음.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94]에서 다자녀 양육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조인철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조인철의원안
다자녀양육자 양육목적 취득 자동차 감면 (§22의2①·②)	감면 대상자	다자녀 양육자	다자녀 양육자
		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② 18세 미만 자녀 2명	① 24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② 24세 미만 자녀 2명
	감면 대상	양육 목적 취득 자동차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① 취득세 100% ② 취득세 50%	
	일몰 기한	~2027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자녀 연령기준 상향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94)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2년 1.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48만명이었으나 2024년 약 24만명으로 감소하였음(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

또한, 미성년·청소년·연소자 등의 연령기준은 개별 법률에서 입법취지,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자녀 연령기준을 상향할지, 상향한다면 기준연령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종 법령·정책상 미성년·연소자·청소년 기준 연령>

구분	해당 법령
만 18세 미만	•「민법」상 혼인 불가능자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및 투표권이 없는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소년
만 19세 이하	•「민법」상 미성년자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우선공급·특별공급대상 다자녀가구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양육 대상인 미성년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세법」 상 직계비속 공제대상(기본공제/다자녀 추가공제)
만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상 청소년 등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56억 1,200만원 임[95].

95) 18세 미만 자녀 2명 이하에 대한 감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다자녀양육자 양육목적 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황(제22조의2)>

(단위: 건, 천 원)

연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하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4,928	59,732,968	2024.12.31. 조문 신설로 실적 X	
2022	27,747	48,074,173		
2023	28,891	50,826,965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출생·양육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9세 이하(「민법」상 미성년)를 지원기준으로 한다는 점, 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감면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감면 확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동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인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확대(김성원의원안 제29조)

개정안은 기존 1급부터 7급까지로 구성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을 추가하여 보철용·생업용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96]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 ---------- ---------- ----------

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1. ~ 4. (현행과 같음)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유공자[97]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98] 등[99], 신체장해등급 1급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97)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후단의 참고자료 참조

9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이를 면제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50%를 경감하고 있음.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99)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이외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도 동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구분	내용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이때,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의미하는바, 동법은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음[100].

<상이등급 판정 예시(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100)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118	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 시야결손)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에 8급을 추

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101]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전제로 상이등급에 8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부상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김성원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성원의원안
국가유공자 등 취득 자동차 감면 (§29④)	감면 대상자	①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①상이등급 1~8급 국가유공자
		②신체장해등급 1~1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현행과 같음)
		③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④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대상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감면 내용	①~③ 취득세 or 자동차세 100% ④ 취득세 or 자동차세 50% (최소납부세제 배제[102])	
	일몰 기한	~2027년	

101)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189호)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및 8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다만,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상이등급을 1급에서 7급까지만 규정하고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을 상이등급 8급을 받은 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77억원, 자동차세 감면액은 약 234억원임.

<국가유공자 등 취득·등록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황(제29조제4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21	9,677	18,174,713	184,445	24,872,971
2022	8,023	16,449,369	174,762	23,347,989
2023	8,581	18,508,802	168,455	22,046,740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여부,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유사 감면인 장애인의 보철·생업용 자동차 감면과의 형평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대상자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참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Ⅱ의원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정안은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현 행	윤준병Ⅱ의원안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2030년----------.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2030년----------.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1. ~ 3. (현행과 같음)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4. 2030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33조의2)

현행법은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103], 도시형생활주택[104], 다가구주택[105]으로서 호별 전용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한정, 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106].

10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됨(「주택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0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포함됨(「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05)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됨(「주택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현행법상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36조의2)>

구분		감면내용
1호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세 25% 감면 (조례로 25% 추가 감면 가능)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2호	전용면적 60m²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3호	전용면적 60m² 이하 호수 限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이는 2024년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07]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특례 조항으로, 소형주택 신축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전세사기의 여파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108]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개정안은 소형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보임.

---

106) 또한,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7) **부동산 대책(2024.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세제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 개정 전제]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법25%+조례25%)

108)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16.6% 증가한 것에 반하여 비아파트 거래량은 1.6% 감소하였음(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후단의 참고자료 1 참조).

<윤준병 Ⅱ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 행	윤준병 Ⅱ 의원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33의2)	감면 대상자	주택신축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매각·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1.10.~2025.12.31. 내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소형주택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 주택 2. 도시형 생활주택 3.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매각·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1.10.~2030.12.31. 내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소형주택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취득세 25% (조례로 25% 내 추가 감면 可)	(현행과 같음)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추징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재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109]하여 비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비아파트 건설 실적이 둔화[110]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형주택 신축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공급자인 주택신축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111], 해당 특례 도입 이후 실제로 소

109) 1인가구의 경우 ('21) 716.5만 → ('22) 750만 → ('23) 783만 가구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국가통계포털,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 별 가구").

110)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아파트 착공 호수는 6,774호로 전년 동기대비 10.5%감소하였고, 준공 호수 또한 7.627호로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하였음(국토교통부, "25년 3월 주택통계").

111)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물신축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이 제기되었음.

형주택 공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Ⅱ)의원안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20억원(연평균 14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12].

(제22대국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09.04.) 회의록 pp18-20
제22대국회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7.) 회의록 pp69-72
제22대국회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 회의록 p21)

11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참고1 주택건설 및 주택거래량 통계 (2025.3. 기준)

[주택건설 : 2025년 1~3월]

□ 비아파트 인허가 : 7,898호(전년 동기대비 7.5% 감소)

구 분 (단위: 호)	2025			2024		전년대비 증감	
	2월	3월	1~3월	3월	1~3월	3월	1~3월
계	12,503	31,033	65,988	25,836	74,558	20.1%	△11.5%
아파트	10,173	27,678	58,090	22,644	66,023	22.2%	△12.0%
비아파트	2,330	3,355	7,898	3,192	8,535	5.1%	△7.5%

□ 비아파트 착공 : 6,774호(전년 동기대비 10.5% 감소)

구 분 (단위: 호)	2025			2024		전년대비 증감	
	2월	3월	1~3월	3월	1~3월	3월	1~3월
계	10,069	13,774	34,021	11,290	45,359	22.0%	△25.0%
아파트	8,040	10,898	27,247	8,230	37,793	32.4%	△27.9%
비아파트	2,029	2,876	6,774	3,060	7,566	△6.0%	△10.5%

□ 비아파트 준공 : 7,627호(전년 동기대비 33% 감소)

구 분 (단위: 호)	2025			2024		전년대비 증감	
	2월	3월	1~3월	3월	1~3월	3월	1~3월
계	36,184	26,124	104,032	49,651	125,142	△47.4%	△16.9%
아파트	33,583	23,939	96,405	46,559	113,755	△48.6%	△15.3%
비아파트	2,601	2,185	7,627	3,092	11,387	△29.3%	△33.0%

[주택거래 : 2025년 1~3월]

□ 비아파트 거래 : 33,110건(전년 동기대비 1.6% 감소)

구 분 (단위: 건)	2025		2024	증감률('25.3월)			누계(1~3월)		
	2월	3월	3월	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 3월 평균比	거래량	전년동기比	5년 3월누계 평균比
계	50,698	67,259	52,816	32.7%	27.3%	△9.0%	156,279	12.2%	△22.0%
아파트	39,925	53,460	40,233	33.9%	32.9%	2.4%	123,169	16.6%	△13.8%
비아파트	10,773	13,799	12,583	28.1%	9.7%	△36.3%	33,110	△1.6%	△42.4%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2 신축 소형주택 예상 감면액(2025년)

(단위: 억원)

구 분	물 량(호)				감 면 액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합 계	
합 계	**5,984**	**5,928**	**1,808**	**13,720**	**91**
서 울	455	2,347	676	3,478	22.7
인 천	76	268	170	514	3.5
경 기	2,243	2,426	0	4,670	29.7
부 산	95	166	50	311	2.0
대 구	152	12	10	174	1.2
광 주	154	66	23	243	1.6
대 전	317	30	0	347	2.3
울 산	71	12	0	83	0.5
세 종	6	11	598	615	5.0
강 원	310	68	20	398	2.6
충 북	403	27	65	494	3.4
충 남	370	55	79	504	3.5
전 북	212	21	7	240	1.6
전 남	199	106	11	316	2.1
경 북	275	34	39	348	2.4
경 남	347	13	0	360	2.4
제 주	299	266	60	625	4.1

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상 전체 물량* 및 전체 감면액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안분

* 유형별 주택 전체 준공 실적을 바탕으로 연도별·지역별 소형주택 비중을 반영하여 유형별 주택의 소형주택 물량 추정, 최근 3년(2021~2023년)연평균 증감률 반영,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위가 '동'으로 동별 60㎡이하 11호로 가정하여 '호' 단위로 주택수 추정

※ 자료: 행정안전부

(안 제33조의3)

현행법은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113]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준공하였으나 미분양[114]된 일정 요건[115]을 갖춘 아파트(이하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라고 함)를 2년 이상에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있음[116].

이는 2024년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7]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특례 조항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

113)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14) 이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의미함.

11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한함.

116) 또한,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17) **부동산 대책(2024.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 **(사업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
* ‘24.1~‘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25%+조례25%)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 또한 일몰기한인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Ⅱ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 Ⅱ 의원안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33의3)	감면 대상자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타인 임대 2년 이상 (2025.12.31. 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타인 임대 2년 이상 (2030.12.31. 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3억원, 85㎡ 이하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취득세 25% (조례로 25% 내 추가 감면 可)	(현행과 같음)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추징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2025년 3월 기준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52,391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543호로 각각 2021년 12월 대비 223%, 200%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을 활용하도록 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지방 미분양 주택 현황>

구 분 (단위: 호)	2021.12	2022.12	2023.12	2024.12	2025.2.	2025.3.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17,710	68,148	62,489	70,173	70,061	68,920	△1,141	△1.6%
수도권	1,509	11,076	10,031	16,997	17,600	16,528	△1,072	△6.1%
비수도권	16,201	57,072	52,458	53,176	52,461	52,392	△69	△0.1%

※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

구 분 (단위: 호)	2021.12	2022.12	2023.12	2024.12	2025.2.	2025.3.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7,449	7,518	10,857	21,480	23,722	25,117	1,395	5.9%
수도권	601	1,292	2,167	4,251	4,543	4,574	31	0.7%
비수도권	6,848	6,226	8,690	17,229	19,179	20,543	1,364	7.1%

※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118], 해당 특례 도입 이후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둔화되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부 등[119]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18)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물신축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이 제기되었음.
(제22대국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09.04.) 회의록 pp21-22
제22대국회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7.) 회의록 p78
제22대국회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 회의록 p21)

119)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 회복 후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정부가 지방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의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제22대국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09.04.) 회의록 pp19-23
제22대국회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7.) 회의록 p78)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내부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Ⅱ)의원안에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702.2억원(연평균 14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20].

12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참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예상 감면액(2025년)

(단위: 억원)

시 도	물 량(호)				감 면 액
	60㎡ 이하	60~85㎡	85㎡ 초과	계	
합 계	1,258	2,060	-	3,318	26.7
부 산	272	90	-	362	2.6
대 구	3	362	-	365	3.3
광 주	37	15	-	52	0.4
대 전	167	16	-	183	1.2
울 산	17	57	-	74	0.6
세 종	11	12	-	23	0.2
강 원	113	97	-	210	1.6
충 북	11	14	-	25	0.2
충 남	182	162	-	344	2.6
전 북	53	11	-	64	0.4
전 남	225	264	-	489	3.8
경 북	38	283	-	321	2.8
경 남	98	346	-	444	3.8
제 주	31	331	-	362	3.2

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상 전용면적 85㎡이하 전체 물량* 및 전체 감면액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안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연도별·면적별 준공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3년(2021~2023년)연평균 증감률 반영, 2022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중 '임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

※ 자료: 행정안전부

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신설(최수진의원안 제33조의4 신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122] 또는 사용승인일[123]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현 행	최수진의원안
<신 설>	제33조의4(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121]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해당 주택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100분의 50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100분의 10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2.8%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음[124].

---

121)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22)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23)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2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로 인해 주택[125]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주택의 원시취득하여 2.8%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해당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해당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1~3%의 취득세가 부과됨.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원시취득함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수도권 내 시행되는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는 취득세의 50% 비수도권 내 시행되는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는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려는 것임.

$$\left(\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times \frac{2}{3\text{억원}} - 3\right) \times \frac{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25)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함.

<최수진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최수진의원안
분양 목적 주택 신축 시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33의4 신설)	감면 대상자	<신 설>	주택건설사업자
	감면 대상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는 주택 (사용검사일 or 사용승인일 1년 이내 限)
	감면 내용		現 취득세(2.8%) × 아래 비율 **수도권** 시행 주택사업 : **50%** **비수도권** 시행 주택사업 : **100%**
	일몰 기한		**~2028년**
	추징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지 않은 경우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과 수분양자의 취득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특히,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126], 연안항로 취항 목적 취득 선박[127]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취득세의 성격과 관련하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유통세[128]로서 원시·승계,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각각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29].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

---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8) "유통세"란 재화의 이전이 있을 때 이를 통하여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129)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함(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용 토지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지방세법」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형식적인 취득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고 있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취득을 단순한 형식적 취득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130][131].

둘째, 조세형평성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주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원시취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30)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일 뿐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형식적인 취득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원분과 달리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고 있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취득을 단순한 형식적 취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6헌바41)

131)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조항'이라 한다)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한다)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음.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각기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인 양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2004헌바76)

즉,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경우, 오피스텔(주거용)건설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주택 건축 등 다른 원시취득자와의 과세 형평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임.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의 원시취득에 대한 감면이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현재 주택건설업자 원시취득세는 연간 약 1.5조원 규모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됨.

<원시취득 비과세 시 세수감소 규모 추계('23 기준)>

(단위: 억원)

적용 범위	총계	수도권(50%)	비수도권(100%)
주택건설업자 분양주택 원시취득	13,317	4,341	6,390
모든 주택 원시취득	15,115	6,111	9,004
모든 부동산 원시취득	3,1269	1,3397	1,7872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행위세로 모든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타 원시취득 부동산과 과세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차량 등 원식취득의 경우 국가정책적으로 수출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

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제외된 예외적인 사례라는 점, 현재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자 및 수분양자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132]을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주택협회는 ① 차량, 선박 등 유사 자산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③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132) 구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0.2%), 멸실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12억원 이하 출산·양육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임.

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엄태영Ⅱ·윤준병Ⅱ·한병도의원안 제36조의3)

개정안들은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최초로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현 행	엄태영Ⅱ·한병도의원안	윤준병Ⅱ의원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13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13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 ---------- ------.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1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1.·2. (현행과 같음)	1.·2. (생 략)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생 략)	② ~ ⑤(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 ---------- ----------.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 ---------- ---------- ---------- ---------- ---------- ---------- ---------- ---------- ---------- ----2030년------- ---------- ---------- ---------- -----. ---------- ---------- -------.
④ · ⑤(생 략)		④ · ⑤(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136]을 취득한

13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34)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35)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각목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음.

가.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left(\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times \frac{2}{3\text{억원}} - 3\right) \times \frac{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13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함.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미만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당초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액을 감면하였으나,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정 면적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한도가 상향되었음.

<현행법상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제36조의3제1항)>

구분			감면내용
1호	가.	전용면적 60m²이하	취득세액 300만원 이하 : 면제 취득세액 300만원 초과 : 300만원 공제
		취득당시가액 3억(수도권 6억) 이하	
		공동주택[137] 중 **연립·다세대주택**	
	나.	전용면적 60m²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수도권 6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138]	
	다.	전용면적 60m²이하 호수 限	
		취득당시가액 3억(수도권 6억) 이하	
		단독주택[139] 중 **다가구주택**	
2호	1호 가.~ 다. 목 외의 주택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 200만원 공제

137)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됨(「주택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38)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포함됨(「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39)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됨(「주택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엄태영(Ⅱ)·한병도의원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Ⅱ)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윤준병(Ⅱ)의원안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요건 중 주택 취득 요건을 현행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기간 요건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엄태영Ⅱ·한병도·윤준병Ⅱ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엄태영Ⅱ·한병도의원안	윤준병Ⅱ의원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36③)	감면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현행과 같음)	생애 최초 주택 취득기간 요건 확대 (~’25년→’30년)
	감면 대상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 (최소납부세제 배제[14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한도 확대의 정책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223억 원임.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현황(제36조의3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25,998	160,624,487
2022	76,168	97,169,270
2023	207,360	409,116,267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한국주택협회는 서민 주거안정과 지방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 출산·결혼과 밀접한 30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가장 높은 비중('24년 기준 42.5%)를 차지한다는 점,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통해 전체적인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엄태영(Ⅱ)[141]·한병도[142]의원안에 따라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조 4,397억원(연평균 4,7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윤준병(Ⅱ)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2조 3,994억원(연평균 4,7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43].

14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4. 15.)
14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14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엄태영Ⅲ·한병도·윤준병Ⅱ·김기표의원안 제36조의5)

개정안들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현 행	엄태영Ⅲ·한병도의원안	윤준병Ⅱ·김기표의원안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30년---------- ---------- ---------- ---------- ---------- ---------- ---------- ---------- ---------- ---------- ---------- ---------- ---------- ---------- ---------- ---------- ---------- ---------- ----------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 략)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엄태영Ⅲ·한병도·김기표의원안)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준병Ⅱ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 가액[144]이 12

144)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145]에 해당할 때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음[146].

이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도입된 특례로,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음.

엄태영(Ⅲ)·한병도의원안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Ⅱ)김기표의원안은 동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46)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배제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엄태영Ⅲ·한병도·윤준병Ⅱ·김기표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엄태영Ⅲ·한병도의원안	윤준병Ⅱ·김기표의원안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36의5)	감면 대상자	~'25 자녀 출산 부모	~'28 자녀 출산 부모	~'30 자녀 출산 부모
	감면 대상	거주목적 취득 주택 (출산일 5년 이내, 취득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최소납부세제 배제[147])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현재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148]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148)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2년 1.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48만명이었으나 2024년 약 24만명으로 감소하였음(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

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엄태영(Ⅲ)[149]·한병도[150]의원안에 따라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708.5억원(연평균 5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윤준병(Ⅱ)[151]·김기표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2,847.5억원(연평균 5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4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4. 15.)
15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15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5. 1.)

차. 기부금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강명구의원안 제40조의4 신설)

개정안은 특례기부금[152] 또는 일반기부금[153]을 받는 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4(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152) “특례기부금”은 국가·지자체 등 공익성이 높은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등 기부금을 의미함(「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2호)

153)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함(「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을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154], 특례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국방헌금, 구호금품을 납부하는 등 공익성 높은 기관에 기부하는 것임. 한편,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함[155].

구체적으로, 현행 「법인세법」[156]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

154) 참고로, 「법인세법」은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종류를 ①특례기부금 ②일반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구분하며, 「소득세법」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을 ①정치자금기부금 ② 특례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 일반기부금 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4대한민국 조세」,2024, p131, p207).

155)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156)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각 목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

금산입한도액[157]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158]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을 납부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나타남.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일반기부금>

구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성격	국가·지자체 등 공익성 높은 기관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기관
관련기관	국가,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유치원·어린이집, 의료기관, 국제기구 등
국세특례	**(법인)** 소득금액 50%까지 손금산입 **(개인)** 소득금액의 100% 필요경비 산입	**(법인)** 소득금액 10%까지 손금산입 **(개인)** 소득금액의 30% 필요경비 산입 (종교단체 기부시 20%)

※ 자료 : 행정안전부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159]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

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57)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대상을 회계기간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금액)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이 손금에 포함되어 손금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감소하게 됨(국회예산정책처, 「2024대한민국 조세」,2024, pp173-174).

158)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9조제2항), 기부금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됨.

159) 현행 「지방세법」은 기부로 인한 무상취득을 "취득"에 포함하고 있으며 무상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적인 것이더라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을 기부받는 경우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담세능력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납부할 재원이 없어 이를 기부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을 기부받는 자, ②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기부받는 자 중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160]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161]가 무상으로 양여받

---

16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161) 참고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①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② 수입금액과 출연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③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임. 단,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은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

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기부금을 받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62]과 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강명구의원안
기부금단체 지방세 감면 (§40의4 신설)	감면 대상자	<신 설>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 (단, 대기업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 限
	감면 대상		무상으로 양여받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일몰 기한		미규정

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본문 생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162) 이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대기업**"을 의미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는 주로 공익적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감면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이 설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를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 집단[163]의 범위가 광범위[164]하여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감면대상 집단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집단도 존재하여 중복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함[165].

---

163) 이에 관한 사항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164)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제5호는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대상자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5)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24조제마목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이미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둘째, 부동산의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규정한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166], 이에 따라 개별 감면특례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공익성 있는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감면받을 물건을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단순히 공익적 활동을 하는 집단에 부동산을 기부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해당 집단이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은 매우 광범위한 대상에 직접 사용 등 별도의 감면요건 없이 기부행위 자체로 감면이 적용되어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개정안대로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의 범위를 회계감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시행할 경우 담세력 있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감면을 더 적용받고 열악한 기관은 감면에서 배제되는 역진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범위

구분	범위
특례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등(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 자. 한국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차. 한국장학재단 5.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가. 가.부터 1파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구분	범위
일반기부금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법인 나. 어린이집 다.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인 및 의료기술협력단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바.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일부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치원의 장·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가.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일부 다. 장애인복지시설 일부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파. 청소년복지시설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구분	범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으로서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나.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6.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7.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소득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Ⅳ의원안 제46조)

개정안은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167]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 행	윤준병Ⅳ의원안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30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2030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③ ----------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030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 2030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46조는 중견기업[168](제1항), 과밀억제권역[169] 밖에 위치한 대기업[170](제2항), 초기중견기업[171](제3항) 및 중소기업[172](제4항) 등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가 동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규정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른바 "대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제4항이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해 규정함에 따라 동법 제46조제1항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16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7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27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 제19936호)**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173]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을 각각 15%p 상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취지로, 최근 경기침체,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7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73) ① 미래형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⑭ 방위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7])

<윤준병Ⅳ의원안의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현행</th><th>윤준병Ⅳ의원안</th></tr>
<tr><td rowspan="6">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6)</td><td colspan="2">감면대상</td><td>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td><td rowspan="6">(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4">감면내용</td><td>대기업(②)
(과밀억제권역 外)</td><td rowspan="2">취득세 35%
재산세 35%</td></tr>
<tr><td>중견기업(①)</td></tr>
<tr><td>초기중견기업(③)</td><td>취득세 50%
재산세 50%</td></tr>
<tr><td>중소기업(④)</td><td>취득세 60%
재산세 50%</td></tr>
<tr><td colspan="2">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td><td>각 감면율에 15%p 추가</td></tr>
<tr><td colspan="2">일몰기한</td><td>~2025년</td><td>~2030년</td></tr>
</table>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99억 6,000만원이며,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64억원임.

<최근 3년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6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11	8,747,356	8,130	6,159,209
2022	378	10,312,581	8,691	6,768,034
2023	394	10,894,304	9,074	6,321,005

※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858.9억원(연평균 17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74].

17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Ⅳ의원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175](안 제47조), 국립공원공단[176](안 제48조), 해양환경공단[177](안 제49조) 등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윤준병Ⅳ의원안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2030년----------. 1.·2. (현행과 같음)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

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면) ----------2030년----------.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2030년----------. 1. ~ 3. (현행과 같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47조)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설치·운영,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등 사업[178]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75)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6)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77)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78)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Ⅳ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Ⅳ의원안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47)	감면 대상자	한국환경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25%, 재산세 25%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기후위기대응 사업 등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4,400만원이며,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7,800만원임.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7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5	95,770	140	75,230
2022	4	10,130	143	83,550
2023	8	26,007	143	76,922

※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68억원(연평균 1.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79].

17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안 제48조)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180]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Ⅳ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Ⅳ의원안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감면 (§48)	감면 대상자	국립공원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25%, 재산세 25%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180)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6. 자연공원의 청소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현재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각 지역의 생태보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8조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64만원이며,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은 94만원임.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8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	436	69	974
2022	5	1,507	72	974
2023	-	-	76	893

※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1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81].

(안 제49조)

현행법은 해양환경공단이 ①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등 사업[182]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②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181)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감면은 연평균 감면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182)「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윤준병Ⅳ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Ⅳ의원안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49)	감면 대상자	해양환경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고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 해양오염방제용·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	
	감면 내용	취득세 25%, 재산세 25%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해양환경은 어촌지역 어업 종사 가구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단이 수행하는 긴급방제조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183]을 받는 등 공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9조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1억 5,400만원이며,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2,400만원임.

183)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해양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9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0	36,197	84	11,204
2022	14	420,572	87	32,726
2023	19	5,187	84	29,035

※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한국해양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5억원(연평균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84].

18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54조)

개정안은 관광단지[185]개발 사업시행자[186]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현 행	윤준병Ⅲ의원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 4. (생 략)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2030년---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185)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86)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윤준병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Ⅲ의원안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54①)	감면 대상자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25% (조례로 25% 내 추가 감면 可)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중심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10억 8,800만원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54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80	2,290,094
2022	87	753,636
2023	43	223,216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48.2억원(연평균 4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87]

18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5.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4조)

개정안은 ① 도시개발사업[188]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189], ② 주거환경개선사업[190]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③ 재개발사업[191]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

188)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9)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91)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 행	윤준병Ⅲ의원안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2030년---------- ----------. ④ ---------- ---------- ---------- ---------- ---------- ----------2030년 ----------. -------- ---------- ---------- ---------- ----------

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⑤ ---------- ---------- ---------- ---------- ---------- ---2030년---------- -. ---------- ----------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있음.

동조 제4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및 관리처분계획[192]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조합원이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193] 또는 특정[194] 주거환경개선사업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1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

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동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195]이 되는 경우(일시적으로 2주택[196]이 되는 경우 포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재정착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윤준병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Ⅲ의원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74③)	감면 대상자	사업시행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	
	감면 내용	취득세 75%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74④)	감면 대상자	① 사업시행자 ② 조합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대지조성 목적 취득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 ②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85㎡ 이하)	
	감면 내용	① 취득세 75% ② 취득세 100%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74⑤)	감면 대상자	① 사업시행자 ② 조합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대지조성 목적 취득 부동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 ②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1가구 1주택 限)	
	감면 내용	① 취득세 50% ②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세 75% 전용면적 60㎡~85㎡ : 취득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최근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점,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공공주도 조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감면[197]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연장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1,285억원, 제4항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82억원,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108억원임.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74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6,570	112,658,309
2022	15,996	156,888,037
2023	10,758	115,892,60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74조제4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7	180,589
2022	723	23,031,033
2023	202	1,366,433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74조제5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93	8,539,621
2022	1,312	13,604,581
2023	1,466	10,759,345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6,160억원(연평균 1,232억원) 감소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8.5억원(연평균 9.7억원) 감소하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5억원(연평균 10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98].

19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5조의2)

개정안은 ① 기업도시개발구역[199]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도시개발사업시행자[200]가 추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지역개발사업구역[201]으로서 낙후지역 등에 개발된 지역개발사업구역[202]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④ 낙후지역 등의 지역개

---

19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0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0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발사업시행자[203]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현 행	윤준병Ⅲ의원안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30년----------.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2030년----------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2. (현행과 같음)

20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 ---------- ---------- ---------- -----2030년---------- ---------- ---------- ---------- ---------- ---------- ---------- ---------- ---------- ---------- ----------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낙후지역 등에 개발된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해당 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한 기준[204]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일 것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경우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윤준병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Ⅲ의원안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내 기업 등에 대한 감면 (§75의2)	감면 대상자	①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	(현행과 같음)
		② 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감면 대상	해당 구역 내 사업 영위 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의 범위 內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산업·연구·관광·레저 등 분야를 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를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른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23억 4,900만원이며,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4억 4,800만원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현황(제75조의2)>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20	3,041,761	42	228,978
2022	64	2,472,390	43	255,447
2023	116	1,534,967	101	860,445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6억원(연평균 2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05]

20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다.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이만희Ⅲ의원안 제75조의3)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206]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되는 '위기지역[207]'에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208]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현 행	이만희Ⅲ의원안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206) "**사업전환**"은 ①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③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207) 중소기업이 소재하였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동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역을 의미함(후술할 본문 참조)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 ---------- ---------- ---------- ---------- ---------- ---------- ---------- ---------- ----------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① ----------

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④ (생 략)	----------인구감소지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 1. 2028년 12월 31일----------.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431호) **제48조의2(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209], 고용재난지역[21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11], 인구감소지역[212] 등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규정하고, 위기지역 내 광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213]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214]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09)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10)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1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2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13)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규정된 업종으로, 구체적인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물류산업 등임.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정보통신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시설관리·경비·보안·행사대행 등 지원서비스업 ⑦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⑧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⑨물류산업 ⑩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⑪관광숙박·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⑫전시산업 등 12개 대분류(지특법§58의3④)

214) 위기지역별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으로 지정된 기간 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215]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산업의 침체, 지역경제 악화, 고용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취지임.

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6]은 농촌식품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중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217],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포함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2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16) 의안번호 제2203431호, 2024.08.30. 제안, 2024.11.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2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만희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현행</th><th>이만희Ⅲ의원안</th></tr>
<tr><td rowspan="7">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 감면
(§75의3)</td><td rowspan="6">감면 대상자</td><td colspan="2">위기지역 내 특정 업종 경영 중소기업</td><td>(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5">위기지역</td><td>1. 고용위기지역</td><td rowspan="4">(현행과 같음)</td></tr>
<tr><td>2. 고용재난지역</td></tr>
<tr><td>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td></tr>
<tr><td>4. 인구감소지역</td></tr>
<tr><td>5. <신 설></td><td>5.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td></tr>
<tr><td rowspan="3">감면 대상</td><td colspan="2">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td><td rowspan="3">(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2">감면 내용</td><td colspan="2" rowspan="2">취득세·재산세(5년간) 50% 감면</td></tr>
<tr><td>일몰 기한</td><td colspan="2">~2027년</td></tr>
</table>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218]에서 농업과 인구 지표로 읍·면의 소멸 위험도를 평가하고, 농촌소멸위험지역을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219].

농촌구조전환우선구역이 지정되고 개정안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구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유도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218)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농촌 1,404개 읍·면 중 1,026개(73.1%)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됨. 또한, 농가인구는 2015년 156.9만명에서 2023년 208.8만명으로 감소하면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38.4%에서 49.8%로 증가하였음(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04.18.)

219)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02.25.

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이 계류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동 개정안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바 인구감소지역은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3 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포함되므로 감면혜택이 중첩될 수 있다는 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실적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약 5억 8,500만 원임.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현황(제75조의3)>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21	-	-	1	140
2022	-	-	1	147
2023	-	-	1	1,46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농촌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추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지역과 관계 없이 농업인 및 농어업인에 대한 감면 규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 위기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별 지정 및 운용기간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2018. 4.~2024. 6.) - 전남 목포시·영암군(2018. 5.~2022. 12.) -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2018. 4.~2022. 12.)
고용재난지역	지정 및 운용 사례 없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2018. 5.~2023. 5.) - 전북 군산(2018. 4.~2023. 4.)
인구감소지역	-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 강원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 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 전북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 전남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 경북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 경남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윤준병Ⅲ의원안 제75조의4)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220]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221](이하 “반환공여구역등”이라 함)에 광업, 제조업 등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광업, 제조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의4제1항).

현 행	윤준병Ⅲ의원안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2030년---------- ------. ----------

220) “**반환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인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의미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221)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반환공여구역은 제외됨)을 의미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등에 광업, 제조업 등 업종[222]을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중소기업이 광업, 제조업 등 업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장[223]을 신설하거나 이전(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규정된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물류산업 등임.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정보통신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시설관리·경비·보안·행사대행 등 지원서비스업 ⑦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⑧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⑨물류산업 ⑩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⑪관광숙박·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⑫전시산업 등 12개 대분류(지특법§58의3④)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윤준병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Ⅲ의원안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75의4①)	감면 대상자	반환공여구역등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창업 목적 취득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장 신설·이전 목적 취득 부동산 (단, 이전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限)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반환공여구역등은 국토 방위를 위해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부지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환공여구역등에 기업을 유치하여 낙후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해당 특례는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동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2023.01.01.로 규정되었으며[224],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3년 취득세 감면 실적은 없음.

---

224)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이만희Ⅰ·Ⅱ·윤준병Ⅲ·박상웅Ⅲ의원안 제75조의5)

개정안들은 ① 인구감소지역[225] 내 일정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이만희Ⅰ·윤준병Ⅲ의원안), ② 해당 특례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226]에까지 확대하며(이만희Ⅱ의원안), ③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면서 해당 특례에 대한 추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박상웅Ⅲ의원안).

현 행	이만희Ⅰ·Ⅱ의원안	윤준병Ⅲ의원안	박상웅Ⅲ의원안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①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2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431호)
제48조의2(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 ----------인구감소지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 ---------- ---------- ---------- ---------- ---------- ---------- ---------- ---------- ----------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2028년 12월 31일-------- ---------- --.	1. 2030년----- ---------- ---------- ---.	1.·2.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	2. ---------- ---------- ---------- ---------- --2023년 1월	2. ---------- ---------- ---------- ---------- ----------	

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2030년----------.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			

세를 추징한다.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 -------1년(제2항에 따른 취득 중 「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 ---------- ----------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		④ ---------- ---------- ---------- ---------- -------인구감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소지역--------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			⑤ 제4항------ ---------- ----------

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 ---------- ---------- --------.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한 업종[227]을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규정된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물류산업 등임.

①광업 ②제조업 ③건설업 ④정보통신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시설관리·경비·보안·행사대행 등 지원서비스업 ⑦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⑧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⑨물류산업 ⑩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⑪관광숙박·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⑫전시산업 등 12개 대분류(지특법§58의3④)

는 부동산 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228]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감면 특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이만희(Ⅰ)의원안은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취득기준일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윤준병(Ⅲ)의원안은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이며, 이만희(Ⅱ)의원안은 해당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에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또한, 박상웅(Ⅲ)의원안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신축 기숙사를 취득 시 추징규정을 완화(해당 용도 미사용 기간 1년 → 2년)하려는 내용임.

<이만희Ⅰ·Ⅱ·윤준병Ⅲ·박상웅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만희Ⅰ·Ⅱ 의원안	윤준병Ⅲ 의원안	박상웅Ⅲ 의원안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 감면 (§75의5)	감면 대상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	인구감소지역·**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	(현행과 같음)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숙사 취득** 기업
	감면 대상	창업·사업장 신설 목적 부동산	(현행과 같음)		창업·사업장 신설·**기숙사 사용** 목적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현행과 같음)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28년	~2028년 (기숙사 취득 限)
	추징	①1년간 해당 용도 미사용 ②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에도 타 용도 사용 등	(현행과 같음)		①1년간 정당 목적 미사용 (**신축 기숙사 취득시 2년**) ②(현행과 같음)

최근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이만희(Ⅱ)의원안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이 계류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동 개정안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되는데, 인구감소지역은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포함되므로 감면혜택이 중첩될 수 있다는 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박상웅(Ⅲ)의원안은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내 인력 확보 필요성, 타 지역 내 기숙사[229]와의 과세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약 46억 8,500만원이며 재산세 감면 실적은 없음.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사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현황(제75조의5)>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21	감면 규정 미도입			
2022				
2023	78	4,685,086	-	-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229)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공공주택사업 및 임대사업자자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제31조 및 제31조의3),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국제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제42조), 개정안과 같이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반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이만희(Ⅱ)의원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촌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추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지역과 관계없이 농업인 및 농어업인에 대한 감면 규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이만희(Ⅰ)의원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40.6억원(연평균 4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230],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36.4억원(연평균 4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31].

23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24.)

23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

개정안은 ① 산업단지[232]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233]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등을 개발·조성한 후 이를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② 산업단지, 산업단지 유치지역[234], 산업기술단지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8조).

현 행	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2030년----------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2030년----------.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 ----------203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2030년----------.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2030년---------- ---------- ---------- ---------- ---------- ---------- ----------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 ---------- ---------- ---------- -------.
1. 대상 지역	1. (현행과 같음)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가. ----------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 ---------- ---------- ----------2030년-------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 ---------- ---------- ---------- ---------- -----2030년----------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 ---------- ---------- ---------2030년----------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2)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①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감면하고 있음(제1항).

또한, ②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등을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출물 등[235]의 용도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236]을 취득·보유하거나(제2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이에 포함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

233)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의미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234) “**산업단지 유치지역**”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의미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

항), ③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제3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감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고 함)가 산업단지 등 지역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는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있으며(제4항), 취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8항)[237].

또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중과배제[238]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제9항)[239].

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236) 이는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의미함. 제3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음.

237) 이때,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238)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후단의 참고자료 참조

239) 동 규정은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동법 개정 당시 해

개정안은 산업단지등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등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윤준병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현행</th><th>윤준병Ⅲ의원안</th></tr>
<tr><td rowspan="5">산업단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78①·②·③)</td><td>감면 대상자</td><td colspan="2">사업시행자</td><td rowspan="4">(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2">감면 대상</td><td colspan="2">① 산업단지등 조성용 부동산 및 토지</td></tr>
<tr><td>②·③</td><td>산업단지등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등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직접 사용 목적</td><td>ⅰ) 부동산
ⅱ) 토지</td></tr>
<tr><td rowspan="3">감면 내용</td><td colspan="2">① 취득세(부동산) 35%
재산세(토지) 35% (수도권 외 산업단지 60%)</td></tr>
<tr><td rowspan="2">②·③</td><td>ⅰ) 취득세 35%</td></tr>
<tr><td>ⅱ) 재산세 5년간 35% (수도권 외 산업단지 60%)</td><td>(현행과 같음)</td></tr>
<tr><td>일몰 기한</td><td colspan="2">~2025년</td><td>~2030년</td></tr>
<tr><td rowspan="5">산업단지 등 입주자에 대한 감면
(§78④·⑧·⑨)</td><td>감면 대상자</td><td colspan="2">① 산업단지, 산업단지 유치지역 등 입주자
② 산업기술단지 입주자</td><td rowspan="4">(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2">감면 대상</td><td rowspan="2">①</td><td>ⅰ) 산업용 건축물등 신축 목적 토지 및 신·증축하는 산업용건축물등
ⅱ)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td></tr>
<tr><td colspan="2">②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건축물 등</td></tr>
<tr><td rowspan="2">감면 내용</td><td rowspan="2">①</td><td>ⅰ) 취득세 50% (조례로 25% 추가 可)
재산세 5년간 35%(수도권 외 산업단지 75%)
ⅱ) 취득세 25% (조례로 15% 추가 可)</td></tr>
<tr><td colspan="2">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배제</td></tr>
<tr><td>일몰 기한</td><td colspan="2">~2025년</td><td>~2030년</td></tr>
</table>

당 조항이 제78조로 이관되면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었음.

산업단지등 및 입주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03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55억원이며, 제7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253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15억원원임.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현황(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21	6,507	45,437,961	1,871	16,562,932
2022	5,340	37,851,554	1,777	15,894,242
2023	4,310	37,686,320	1,517	14,055,356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현황(제78조제4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건수	감면액	감면건수	감면액
2021	5,332	156,559,746	20,185	42,358,835
2022	7,425	324,221,362	19,437	43,586,371
2023	4,628	195,131,451	18,743	38,694,44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5,217억원(연평균 2,5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40)241)].

24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241) 단,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중과배제의 경우 연평균 감면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참고 **현행법 제78조에 따라 배제되는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세 목 별	중 과 대 상 및 세 율
취득세 「지방세법」 §13①~④	○ **대도시**(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한 중과 –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및 **공장 신·증설** 목적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배** – **법인설립, 지점설치, 대도시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 대도시내 설치가 불가피한 중과제외 업종은 표준세율 적용
등록면허세 (등록분) 「지방세법」 §28②,③	○ **대도시 법인** 중과세 –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기** : **3배** 중과(0.6~1.2%, 표준세율 0.2~0.4%) –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등기** : **3배** 중과(120,600원, 표준세율 40,200원) – 대도시내 **전입 등기** : **3배** 중과(337,500원, 표준세율 112,500원)
재산세 「지방세법」 §111②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5배** 중과(1.25%, 표준세율 0.25%)

※ 자료: 「2024년도 지방세 개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의2)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242]이 고유사업[243]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현 행	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 ---------- ---------- ---------- ---------- ---------- ---------- ---------- ----------2030년----- ----------. ---------- ----------

2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2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지식산업센터[244]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245]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246]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 및 재산세의 100분의

---

2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4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Ⅲ의원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78의2)	감면 대상자	한국산업단지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사업 수행 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35%, 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조성,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약 6억 7,2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약 7억 7,600만원임.

<한국 산업단지 공단에 대한 감면(제78조의2)>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76	1,432,428	1,263	771,723
2022	8	144,225	1,272	811,641
2023	61	441,693	1,271	746,52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방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5.3억원(연평균 1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47]

24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의3)

개정안은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248](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이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위한 외국인투자[249]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결정[250](이하 “조세감면결정”이라 함)을 받은 뒤 외국인투자신고사업[251]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② 신성장동력산업[252]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방식[253](이하 “사업양수도 방식 외국인투자”

---

24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49)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용도에 사용하는 것, ⑤ 그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등을 의미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2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52)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사업으로,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기술에 투자하는 사업을 의미함.

25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라고 함)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 행	윤준병Ⅲ의원안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 ---------- ---------- ---------- ---------- ---------- ---------- ----------2030년---------- ---------- ---------- ---------- ---------- ---------- ---------- -----. ---------- ---------- ---------- ---------- ---------- --.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③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	1.·2. (현행과 같음)

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② 2030년----------.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2.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③ ---------- ---------- ---------- ---------- ---------- ---------- ----------. -- ---------- ---------- ---------- ----------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30년---------- ---------- ---------- ---------- ---------- ---------- ---------- ----------.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	가.·나. (현행과 같음)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2030년---------- ---------- ---------- ---------- ---------- ---------- ---------- ---------- ---------- ----------.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	

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 ⑮ (생 략)	④ ~ ⑮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254]에 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5년 이내 외국인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255]을 곱한 세액(이하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고 함)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5년간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고 함)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제1항)[256][257].

---

25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호의2. ~ 3. (생략)

255) 이는 외국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의미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및 「외국인투자법」 제5조제3항)

256)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 시 취득세 감면세액의 50%가 감면됨. 재산세 또한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비율로 감면됨.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외국인투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이후 이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 뒤 그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제2항)[258][259].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사업양수도 방식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특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뒤 2년간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있음(제3항제1호).[260]

또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이후 이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있음(제3항제2호)[261].

---

257)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상향할 수 있음.

258)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 산출세액의 100%가 감면되며, 그 후 2년간은 50%의 비율로 감면됨.

259)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상향할 수 있음.

260)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상향할 수 있음.

261)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윤준병ㅣㅣㅣ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준병ㅣㅣㅣ의원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사업개시일 後) (§78의3①)	감면 대상자	외국인투자기업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5년(3년) 100%, 2년 50%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5년(3년) 100%, 2년 50% (조례로 감면기간 및 감면율 상향 可)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사업개시일 前) (§78의3②)	감면 대상자	외국인투자기업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100%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5년(3년) 100%, 2년 50% (조례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상향 可)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사업양수도 방식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사업개시일 後) (§78의3③1)	감면 대상자	외국인투자기업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사업양수도 방식 외국인투자사업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세액 3년 50%, 2년 30% 재산세 감면세액 3년 50%, 2년 30% (조례로 감면기간 및 감면율 상향 可)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상향할 수 있음.

구분		현행	윤준병Ⅲ의원안
사업양수도 방식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사업개시일 前) (§78의3③2)	감면 대상자	외국인투자기업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사업양수도 방식 외국인투자사업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50%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3년 50%, 2년 30% (조례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상향 可)	
	일몰 기한	~2025년	~2030년

※ 주) 신성장동력사업 외 사업 투자 시 감면기간 차증 적용(제1항 및 제2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2억 6,5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 5,000만원이며,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3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약 4,700만원임.

<사업개시일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현황(제78조의3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8	1,814,866	16	49,335
2022	31	4,276,261	33	84,616
2023	26	6,706,031	73	316,187

<사업개시일 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현황(제78조의3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	176	3	52,140
2022	-	-	2	51,088
2023	1	909,430	2	37,730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9억원(연평균 42.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62)]

참고 외국인투자사업 개요

감면 사업	구분 (조특법 §121의2①)	투자요건 등	
		대상사업	투자금액
1 유형	(제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사업	공장시설 설치·운영	$ 2백만 ↑
	(제2호) 「외촉법」 §18①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제조업 등	$ 3천만 ↑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2천만 ↑
		물류업, SOC	$ 1천만 ↑
		R&D	$ 2백만 ↑
		공동사업	$ 3천만 ↑
2 유형	(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1천만 ↑
		물류업, 의료기관	$ 5백만 ↑
		R&D	$ 1백만 ↑
	(2호의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3천만 ↑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 & 총개발사업비 $ 5억 ↑	
	(2호의4)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1천만 ↑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 & 총개발사업비 $ 1억 ↑	
	(2호의5)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2호의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등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R&D	$ 2백만 ↑
	(2호의7)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 3천만 ↑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 & 총개발사업비 $ 5억 ↑	
	(2호의8)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제조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1천만 ↑
		물류업, 의료기관	$ 5백만 ↑
		R&D	$ 1백만 ↑
	(2호의9) 「새만금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3천만 ↑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 & 총개발사업비 $ 5억 ↑	
	(3호)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자유무역지역법」 §10①제2호 및 제5호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 자료: 행정안전부

26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허성무의원안 제78조의4 신설)

개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263] 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의 토지, 신축·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현 행	허성무의원안
<신 설>	제78조의4(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지역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 또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264], 「산업기술단지 지

263)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008호,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에 근거하여 국가산업단지 중 지역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단지를 의미함.

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265] 등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단지 등 지역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266].

---

264)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이에 포함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

265)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의미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면 내용>

대상지역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감면율
산업단지	해당 지역 입주자	산업용 건축물등 신축목적 토지 신·증축 산업용건축물등	취득세 50% (조례로 25% 추가 可) 재산세 5년간 35% (수도권 외 75%)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대수선 산업용 건축물등	취득세 25% (조례로 25% 추가 可)

그런데,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267]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268]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69].

---

267) 의안번호 제2210008호,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2025.04.22. 발의, 2025.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68)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269)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008호,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제7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전환, 기술의 융합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제9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9조(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정

이에 개정안은 동 제정안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보다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신산업 기반 기업에 수도권 외 지역 입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허성무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78④)	허성무의원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78의4 신설)	감면 대상자	산업단지 입주자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대상	① 산업용 건축물등 신축 목적 토지 및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현행과 같음)
		②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③ <신 설>	③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감면 내용	① 취득세 50% (조례로 25% 추가 可) 재산세 5년간 35% (수도권 외 산업단지 75%)	① 취득세 60% (조례로 25% 추가 可) 재산세 5년간 85%
		② 취득세 25% (조례로 15% 추가 可)	② 취득세 35% (조례로 15% 추가 可)
		③ <신 설>	③ 등록면허세 10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추징 규정	① 정당사유 없이 3년간 해당 용도 미사용	(현행과 같음)
		② 해당용도 사용기간 2년 미만임에도 매각·증여·타용도 사용	

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착공 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270]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수도권 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특례 도입에 있어서는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회부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지켜본 뒤 이와 함께 논의·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노후화된 산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능화 산업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감면율 차등은 입주기업 간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도 유사 제도와 비교 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70)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는 2022년 471개, 2023년 482개, 2024년 487개로 증가 추세임.

차.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특례(박상웅 Ⅰ의원안 제79조의2)

개정안은 지원대상 국내복귀[271]기업이 인구감소지역[272]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현 행	박상웅 Ⅰ의원안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 ---------- ----------

	---------- ---------- ----------.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② ---------- ----------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71) "**국내복귀**"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여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거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기술의 제품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려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7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73].

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조례로 100분의 50 추가 가능)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면서 지방자치단

---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7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체의 장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복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박상웅 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박상웅 Ⅰ의원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79의2)	감면 대상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①해외사업장 청산·양도 ②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 신·증설 ③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사업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간 75%	취득세 50%+50%(조례) (**인구감소지역 75%**+25%(조례)) 재산세 5년간 75%
	일몰 기한	~2026년	(현행과 같음)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해당 특례의 인구유입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하나 해당 감면의 일몰기한은 2026년 말 도래 예정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의 정책환

경 변화,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몰도래 시 연장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도걸·박정하의원안 제80조의2)

개정안들은 ①기회발전특구[274] 내에서 일정한 업종[275]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②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현 행	안도걸의원안	박정하의원안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274)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의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및 제23조)

275) 이는 건설업, 공연시설 운영업·공연단체·예술관련 서비스업, 광업, 광고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업종을 의미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별표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 ---------- ---------- ------.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 ----------2026 31년---------- ---------- ---------- ---------- ---------- ---------- ---------- ---------- ---------- ---------- ---------- ---------- ---------- ----------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		1. ---------- ---------- ---------- ----------2031년---------- ---------- ----------

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 ---------- ---------- ---------- ----------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 ---------- ---------- ---------- ---------- ---------. ---------- ---------- ---------- --------.	③ ---------- ---------- ---------- ---------- ---------- ------.---------- ---------- ---------- --------.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1. ---------- ---------- ---------- ----------2030 년 12월 31일------ ---------- ---------- ----------	1. ---------- ---------- ---------- ----------2031 년---------- ---------- ---------- ----------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 다. (생 략) 2. (생 략)	---------- ---------- ---------- ----------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①기회발전특구에서 일정한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 창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재산세를 면제[276]하고[277](제1항), ②수도권[278]에서

276)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279](제2항), ③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280]하면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281]를 감면하고 있음(제3항).

박정하의원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안도걸의원안은 동조제3항에 따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유입을 진흥하려는 취지임.

---

277)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278) 단,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을 제외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79)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280)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

281)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분의 35

<안도걸·박정하의원안의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현행</th><th>안도걸의원안</th><th>박정하의원안</th></tr>
<tr><td rowspan="6">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80의2)</td><td rowspan="3">감면 대상자</td><td>① 특구 내 창업 기업</td><td rowspan="5" colspan="2">(현행과 같음)</td></tr>
<tr><td>② 수도권→수도권 외 특구 이전 기업</td></tr>
<tr><td>③ 특구 내 공장 신·증설 기업</td></tr>
<tr><td>감면 대상</td><td>사업용 부동산</td></tr>
<tr><td rowspan="3">감면 내용</td><td>① 취득세 50% +50(25)%(조례)
재산세 5년간 100%
+5년간 50%(조례, 수도권 외 限)
(수도권 3년 100%, 2년 50%)</td></tr>
<tr><td>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간 100%
+5년간 50%(조례)</td><td rowspan="2">①·②(현행과 같음)</td><td rowspan="2">~2031년</td></tr>
<tr><td>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5년간 75%
(수도권 5년 35%)</td><td rowspan="2">일몰 기한</td><td rowspan="2">~2026년</td><td>③ ~2030년</td></tr>
</table>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의 창업, 이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기업의 유치 및 장려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감면의 일몰기한은 2026년 말 도래 예정으로, 해당 정책환경의 변화, 지원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몰도래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282].

282) 한편, 안도걸의원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고, 박정하의원안은 2025.06.25. 기준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타. 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조인철Ⅱ의원안 제80조의3 신설)

개정안은 기업이 도심융합특구[283]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사업시행자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현 행	조인철Ⅱ의원안
<신 설>	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3.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 의하면 도심융합특구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지정을 신청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지정됨[284].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285], 사업시행자는 개발

283)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인지 여부,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인지 여부,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함(「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 및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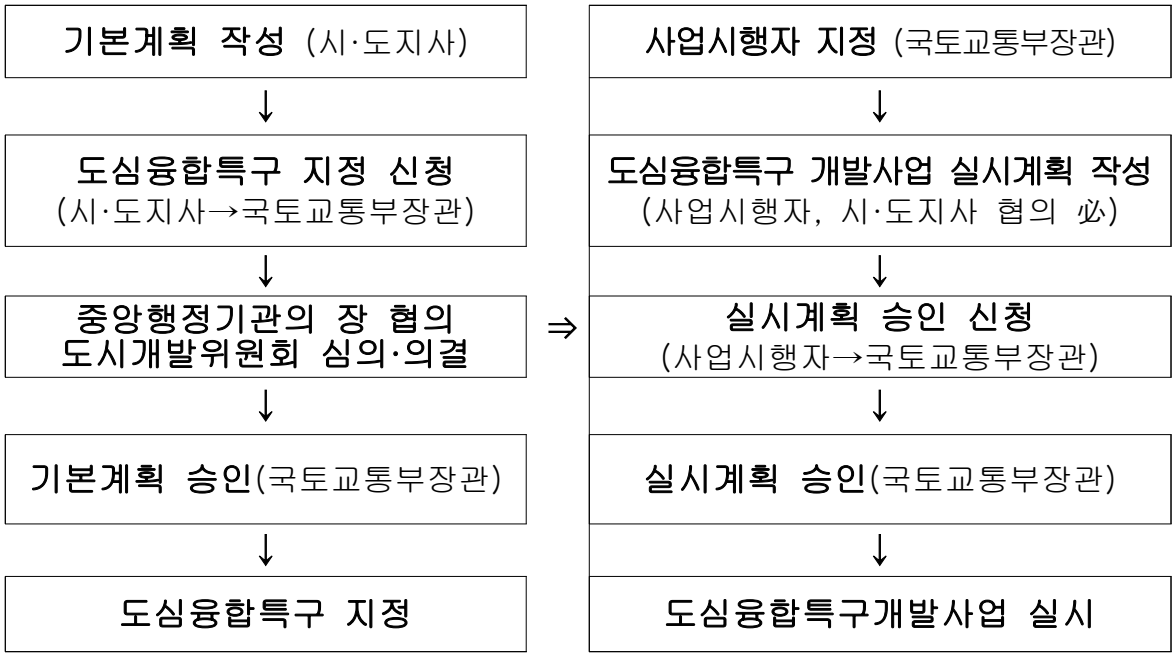
28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286].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승인 절차>



---

28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28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기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인철Ⅱ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조인철Ⅱ의원안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8①)	감면 대상자	<신 설>	①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기업
			②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③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대상		사업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및 재산세 50% 이내 (조례)
	일몰 기한		~2028년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하거나 입주하는 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특구 내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3.10.24. 제정 후 2024.04.25. 시행되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립하고 특구를 지정한 상황[287]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구 조성 초기부터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도심융합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아직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28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도심융합특구 관련 제정법 시행 후 최근 지자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구가 지정되었으므로, 추후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신청 등 사업이 구체화되면 지원 필요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한편,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기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9]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의안의 심사 경과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87)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최근 지방 5개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11월 7일 특구 지정이 완료되었음.

288)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5년 말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며, 특구 조성 및 준공은 2026년 이후 완료될 예정임.

289)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35호, 2025.03.25. 발의, 2025.03.26.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파. 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설(박상웅Ⅱ의원안 제80조의3 신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290](이하 "관리지역등"이라 함)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공업지역[291]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현 행	박상웅Ⅱ의원안
<신 설>	제80조의3(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중 법인이 공업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

	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라 함)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을 체계적인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29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

290) **「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91) "**공업지역**"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공업지역을 의미함. 단, 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과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됨(「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도시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수립[293]하도록 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업지역을 공업지역정비구역[294]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시공업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295][296]이 발의되었음.

---

292) **「도시공업지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93)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는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94) **「도시공업지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업지역정비구역**"이란 공업지역 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을 말한다.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23조(시장·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① 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업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리지역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 뒤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해당 기업 중 공업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상웅Ⅱ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박상웅Ⅱ의원안
공장의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감면 (§80의3)	감면 대상자	<신 설>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자 중 관리지역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자
	감면 대상		① 사업용 부동산
			②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감면 내용		①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② 등록면허세 100%
	일몰 기한		~2028년
	추징		① 지방세 감면기간 중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품 생산 공장 다시 설치
			② 해당 사업 직접 사용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타 용도 사용

295)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014호, 2025.04.22. 발의, 2025.04.23.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96) **「도시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014호)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① ~ ③ (생 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동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조세형평성[297]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 특례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산업단지 및 개정안에 따른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 비교>

구분	현행법상 산업단지	개정안에 따른 공업지역
감면 대상자	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② 산업단지 입주 기업	공업지역 이전 기업
감면 대상	사업용 부동산	① 사업용 부동산 ②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감면율	①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 외 60%)	①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② 취득세 50%(+조례 25%) 재산세 5년간 35%(수도권 외 75%)	② 등록면허세 100%

29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세의 형평성

「도시지역법」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수도권 외 재산세 60%),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75%, 재산세를 5년간 35%(수도권 외 75%) 감면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공업지역에 이보다 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업지역 통계>

구분	공업지역('21년말 기준)		
	전체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
면적(㎢)	1,222	944.7	277.3
비중(%)	100	77.3	22.7

※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법체계 측면에서 현행법상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설정할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여 현행법상 감면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감면[298],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299], 수도권

298)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100%(그 후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299)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해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100%(3년간 50%) 감면(「지

외 지역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300] 등 특정 지역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업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1]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의안의 심사경과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용도지역으로의 이전만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지방 이전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현행 감면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산업단지 미지정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단지보다 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80조)

300) 수도권 내 기업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시 취득세 50%(초제로 50% 추가), 재산세 5년간 100%(조례로 5년간 50% 추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2항)

301)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015호, 2025.04.22. 발의, 2025.04.23.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의원안 제81조)

개정안은 ① 이전공공기관[302]이 지방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②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1조).

현 행	윤준병Ⅱ의원안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 ----------2030년---- ---------- ---------- ---------- ----------. ② ---------- ------2030년---------- ----------. ③ ----------

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 ---------- ---------- ---------- 2030년----------. 1.·2. (현행과 같음)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303] 승인을

3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또한, ①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②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이전계획[304]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305]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공무원, ③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는 2017년 일몰이도래(등록면허세는 2016년)하였으나, 2022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추가적으로 지방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이 존재[306]하여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0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306) 당시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의 이전이 결정되어 있었음.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특례가 다시 도입되었음[307].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그 임직원·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윤준병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현행</th><th>윤준병Ⅲ의원안</th></tr>
<tr><td rowspan="4">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81①·②)</td><td>감면 대상자</td><td>이전공공기관</td><td rowspan="3">(현행과 같음)</td></tr>
<tr><td>감면 대상</td><td>① 지방이전 목적 취득 부동산
② 법인등기</td></tr>
<tr><td>감면 내용</td><td>① 취득세 50%, 재산세 50%(납세의무 성립 이후 5년)
② 등록면허세 100%</td></tr>
<tr><td>일몰 기한</td><td>~2025년</td><td>~2030년</td></tr>
<tr><td rowspan="5">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감면
(§81③)</td><td>감면 대상자</td><td>①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이주 중앙행정기관등의 공무원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td><td rowspan="4">(현행과 같음)</td></tr>
<tr><td>감면 대상</td><td>거주 목적 취득 주택</td></tr>
<tr><td rowspan="3">감면 내용</td><td>취득세 감면</td></tr>
<tr><td>전용면적 85㎡ 이하 :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102㎡이하 : 75%
전용면적 102㎡ 초과 135㎡이하 : 62.5%</td></tr>
<tr><td>일몰 기한</td><td>~2025년</td><td>~2030년</td></tr>
</table>

307) 한편, 이전공공기관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감면 특례는 당시 일몰이 만료되지 않았고 계속 유지되어 왔음.

최근 지방소멸 대응책으로서 다시 공공기관 등의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308],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 소속 임직원,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9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5억 2,000만원,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만원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 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7억 2,000만 원임.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현황(제81조제1항 및 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	-	815	2,347,959	-	-
2022	2	452	571	1,737,919	-	-
2023	1	145,706	70	478,889	5	125

308) 다만,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5년 6월 기준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으로 3년 전과 같음.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81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832	2,485,549
2022	603	1,988,860
2023	209	690,197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5.3억원(연평균 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09]

30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11.)

6.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가. 지방공사가 취득하는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등(정춘생의원안 제85조의2 및 제177조의2)

개정안은 ①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면서, ②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상 공익사업[310]을 위하여 취득한 철거예정인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신설하고, ③ 해당 특례에 대해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및 제177조의2제2호).

현 행	정춘생의원안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2028년 12월 31일---------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철거예정인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 ---------- ---------- ---------- ---------- ---------- ---------- ---------- ---------- ---------- ----------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 ---------- ---------- ---------- ---------- ---------- ---------- ---------- ---------- ---------- ----------제85조의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10)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이란 동 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①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②공익 목적의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에 관한 사업,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 사업, ④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사업, ⑤국가 등이 임대나 양도

현행법은 지방공사[311]가 그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312]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313]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음.

또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314]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함)[315]에 대해서는

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의미함(「토지보상법」 제2조2호 및 제4조).

311)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조달됨(「지방공기업법」 제49조부터 제57조의2까지)

312)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313) 이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금의 비율을 의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31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31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316]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철거 예정인 주택 및 건축물(이하 “공익사업용 철거예정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317]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최소납부세제[318]를 배제하려는 것임.

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316)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17)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정춘생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정춘생의원안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85의2①)	감면 대상자	지방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② 국가·지자체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등	
		③ <신 설>	③ **공익사업용 철거예정건축물등**
	감면 내용	① 취득세·재산세 50%(조례) × 지자체 투자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재산세 100%(반대급부有 50%) ※ 최소납부세제 배제	
		③ <신 설>	③ 취득세 **50%**(조례) × **지자체 투자비율** 재산세 **100%**
	일몰 기한	① ~2025년	① ~2028년
		② ~2027년	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 ~2028년

이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취득과 지장물 취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점,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공익사업용 철거예정건축물등 또한 공익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법체계 측면에서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용 철거예정건축물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로 부동산, 주택 등의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직접 사용[319]"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바[320], 특례 신설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성 및 조세 형평성[321], 법체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특례 신설 여부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20) 단, 임대가 목적 주택 및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예가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3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세의 형평성

한편, 대법원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이 국가에 귀속시키는 부동산 등[322]에 해당하거나 이를 임대·분양·공급을 목적으로 취득[323]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 건축물은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과 별개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현행 법령상 감면의 여지가 없다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324][325].

---

3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24) 2020.06.11판결 2020두35295

둘째, 개정안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는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과 무관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학교·도서관 건립사업 등도 포함되므로 공익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

325) 구체적으로, ① 토지와 건물은 「지방세법」 상 별개의 과세대상이라는 점, 동 건축물을 기부채납 또는 귀속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동 건축물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가에 귀속시키는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기되었음. 또한, ②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분양·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동 건축물은 처음부터 철거 예정된 건물로, 해당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142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438억원임.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현황(제85조의2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677	134,673,743	2,802	14,702,362
2022	5,397	102,356,510	2,680	14,887,176
2023	4,934	105,727,238	2,695	13,560,771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공익사업용 철거예정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공사가 해당 건축물등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공익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 지방공사 중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담세력이 충분하다는 점[326]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원안에 따라 00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00억원(연평균 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27]

326)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626억, 2020년 720억, 2021년 846억, 2022년 677억, 2023년 621억원임.

32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6. 00.)

7. 지방소득세 특례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김예지의원안 제138조의2 신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328]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연간 임대로 인하액이 직전 연간 임대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임대로 인하율”이라고 함)만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의 한도에서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328)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상가건물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로 규정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인하액이 직전 연간 임대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

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329].

이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불리는 제도로서 2020년 3월 당시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도입[330]되어 2020년 12월, 2021년 3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개정을 통해 여섯 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고[33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1,550억원이 감면되었음.

329)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0) 「법률 제17073호 조세특례제한법」(2020.03.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참고

331) 2020년 3월 도입 당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인하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2021년 11월 개정으로 2020년 2월 1일~2021년 6월 30일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폐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전망)	2025년(전망)
전체	1,672	1,970	1,006	513	545
소득세	1,448	1,597	801	416	443
법인세	225	373	205	98	102

※ 자료 :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 참조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려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료를 인하할 유인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김예지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예지의원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138의2)	감면 대상자	<신 설>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감면 내용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임대료 인하율(50% 한도)만큼 감면
	일몰 기한		~2027년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332]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333] 체감

332) 한국은행에 의하면,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로 2023년 1.4%대비 상승하였으나, 2025년 경제성장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2024년 상가건물 임대료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임대료 상승은 물가 상승[334]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체감지수>

구분	2024년										202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체감지수	64.5	64.8	64.4	57.3	54.5	55.4	65.6	69.1	62.4	53.7	47.6	-

주) 체감지수 > 100 이면 전월대비 호전되었다고 체감, 체감지수 < 100이면 악화되었다고 체감
※ 자료 : 『2025년 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 임대료 현황(전국)>

(단위: 천원/m^2)

구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대형 상가	25.56	25.55	25.59	25.61	25.62	25.66	26.49	26.50
소규모 상가	19.35	19.36	19.39	19.40	19.41	19.43	20.66	20.65
집합 상가	26.76	26.74	26.74	26.77	26.77	26.78	27.06	27.03

※ 자료 : '임대동향 지역별 임대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335]

률은 1.5%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경제전망보고서('25.2)』).

333) BSI지수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2025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

334)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환율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월 중 2% 초반(전년동월대비 2.2%)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경제전망보고서('25.2)』, 한국은행)., 2020년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4년 12월 115.71, 2025년 1월 115.7, 2월 116.1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생산자물가 지수 또한 2024년 12월 119.52, 2025년 1월 120.27, 2025년 2월 120.33으로 상승추세임(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해당 특례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방역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대응으로서 본 특례제도 도입·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효과성 내지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336], 2023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연구는 본 세액공제 제도가 상가임차료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음[337].

둘째, 형평성 측면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경우 공실인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와의 조세 형평

---

335)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상가빌딩**"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상가'라고 지칭되는 건물 유형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상업 활동에 이용되는 부동산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중대형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총 5,761동)
소규모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총 5,526동)
집합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인 집합건축물 (총 29,500호)

336)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09.

337) 권성준·최인혁, 「상가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의 경제적 효과:소상공인 상가임차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23.12.

성[338]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상가건물 공실률 현황(전국)>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대형 상가	13.28	13.43	13.60	13.52	13.68	13.79	12.73	13.03
소규모 상가	6.89	6.95	7.30	7.30	7.62	8.01	6.53	6.74
집합 상가	9.31	9.33	9.38	9.92	10.12	10.21	10.08	10.09

주) $공실률 = \frac{\sum 건물\ 공실면적}{\sum 임대가능면적} \times 100$

※ 자료 : '임대동향 지역별 공실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해당 감면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임[339]

또한,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를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

33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세의 형평성

339)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한 재산세 특례이므로 “제2장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해 보임.

넷째, 부칙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동 개정안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공포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산세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보유사실 자체를 담세력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공실 소유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 지역별로 경기침체, 재정여건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 감면 적용보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1항[340]에 따라 조례[341]를 통한 감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34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41)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적용한 사례가 있음.

나. 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박정의원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등)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342]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이 접경지역 내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현 행	개 정 안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

3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② ---------- ---------- ---------- ---------- ---------- ---------- ---------- ---------- ---------- -------제5호·제8호---------- ---------- ---------- ---------- ---------- ---------- ---------- -------제5호·제8호---------- ---------- ---------- ---------- ----------

액을 각각 경감한다.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156조제1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34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새만금사업[344] 등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함)[345]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일정한

3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4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4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2항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또는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5년간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감면대상사업에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346]로 보임.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새만금사업

3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박정의원안
접경지역 기업 감면 (§156)	감면 대상자	<신 설>	접경지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증축하는 기업의 사업에 투자하는 자
	감면 대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면 내용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일몰 기한		-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47], 개정안은 동 조항의 취지에 따라 접경지역 내 기업에 투자한 자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신설하여 접경지역 내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34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범위>

구분	시·군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민간인통제선이남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경기도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속초시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박정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48]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도입할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67조의2[349]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3

348) 「조세특례제한법」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려는 내용임.

349)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장(지방소득세 특례)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박정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내 기업에 투자한 자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개정안 심사 시 해당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를 공제·감면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장철민의원안 제164조 삭제)

개정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4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삭 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정치자금법」[350]은 동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350) **「정치자금법」**
제59조(조세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받은 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351].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352].

---

②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 영수증 원본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351) 이와 관련된 사항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5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치자금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현행법상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내용	10만원 이하	90.9%	소득세 세액공제의 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시 25%)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353]이 제기되었음[354].

이에,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가 선거권을 보유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355]임.

---

3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43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54) 구체적으로, 2024년 실시된 제22대 총선의 선거인 수는 약 4,428만 명이나, 2023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약 2,085만명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참고)

355)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434호, 2025.02.26. 발의, 2025.04.15. 기준 미상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정치후원권>

제24조의2(정치후원권 발행·지급) ① **국가**는 국민이 이 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일만원의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정치후원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5매씩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연도부터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권의 발행·지급·사용, 그 밖에 정치후원권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정치후원권의 유효기간) 정치후원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4(정치후원권의 사용 및 제한) ① 정치후원권은 후원금 및 기탁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치후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장철민의원안
정치자금 기부 세액공제 폐지 (§164)	감면 대상자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삭 제>
	감면 대상	기부한 정치자금	
	감면 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 세액공제	
	일몰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권을 발행·지급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본 뒤 이와 함께 논의·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권을 발행·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 여부[356], 소수정당에 미치는 영향, 현행법상 정당보조금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동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을 삭제할 입법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 제167조의2[357]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

356)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선거인 약 4,428만명에게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경우 약 2조 2,140억원이 소요됨.

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3장(지방소득세 특례)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장철민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개정안 심사 시 해당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연평균 266억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연평균 약 26.6억원으로 추정됨.

---

357)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소득세	268	217	314	281	302
개인지방소득세	26.8	21.7	31.4	28.1	30.2

※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를 공제·감면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임.

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주철현·윤준병 I 의원안 제167조)

개정안들은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358]을 적용받는 법인(이하 “조합법인등”이라 함)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7조).

현 행	주철현의원안	윤준병 I 의원안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 ---------- ---------2028년 12월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 ---------- ---------2030년---

358)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31일----------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359]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따른 법

359)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인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법인등>

구분	내용
①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상활협동조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은 조합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360]과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9%의 세율(20억 초과분은 12%)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

$$\text{법인세액} = \underbrace{(\text{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pm \text{손금불산입액})}_{\text{과세표준}} \times \underbrace{9\%\ (20\text{억 초과분 } 12\%)}_{\text{세율}}$$

360) “당기순이익”은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정기간(해당기간)의 순이익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법상 수익·비용차이를 가감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 산출됨(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조세』(국회예산정책처) 등 참조).

이는「법인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361] 및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로,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의 재원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362]

구체적으로, 조합법인등은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일반법인 및 조합법인등에 대한 과세표준 비교>

구분	과세표준
일반법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 시행령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기부금, 대손금 등)
조합법인등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일반법인 및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과세표준	일반법인		과세표준	조합법인등	
	법인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2억 이하	9%	0.9%	20억 이하	9%	0.9%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2.1%	20억 초과	12%	1.2%
3,000억 초과	24%	2.4%			

361)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55조는 각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세 차감 전 단기순이익±세무조정)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액=[(법인세 차감 전 단기순이익±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세율
과세표준

362)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025, p214.

주철현의원안은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Ⅰ)의원안은 이를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은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 제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주철현·윤준병 Ⅰ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주철현의원안	윤준병Ⅰ의원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67)	감면 대상자	조합법인등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조합법인등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내용	법인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결정 * 과세표준 20억 이하 9%, 20억 초과 12%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2030년

다만,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63]이 발의되

363)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736호, 2025.01.23. 발의, 2025.4.15. 기준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의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230억원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10%인 423억원으로 추정됨.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현황(제167조)>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법인세	3,347	4,230	5,113	3,289	3,444
법인지방소득세	334.7	423	511.3	328.9	344.4

※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철현의원안에 따라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121억원(연평균 3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364],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520.2억원(연평균 38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65].

36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2. 19.)

36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3. 19.)

8.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가. 지방세지출예산서 작성 등(정성호의원안 제5조 및 제181조의2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범위를 ①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으로 확대하고,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보고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면서,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세지출예산서’[366]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1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1조의2(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

366) 지방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의미함.

	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함)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367] 및 「지방회계법」[368]은 예산안과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369][370].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

---

36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368)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369) 「지방자치법」은 예산안을 광역지자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기초지자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지방세지출보고서 또한 동 시기까지 제출되어야 함.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70) 「지방자치법」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3월 21일)**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지방세지출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3월 21일까지 작성되어야 함.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지출보고서 또한 동 시기에 맞춰 제출되어야 함.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371], 이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372].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 비교>

구분	지방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작성목적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작성 → 지방세 특례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제고	◦ 조세 지출내역 작성·공표 →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효율적 감면제도 운용
첨부대상	예산안, 결산서	예산안
작성범위	(예산안) 전년도 실적, **해당**연도 추정치 (결산서) 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해당**·**다음**연도 추정치
제출시기	(예산안) 광역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결산서) 작성 다음 회계연도 **3.21**까지 제출 다음 회계연도 **5.31**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보고대상	지방의회	국회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371) 이때,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372)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 또한 동 시기에 맞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 대응되는 지방세지출예산서[373]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374]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에도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뿐만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방세지출보고서 보완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범위 확대 **(현행)** 해당연도 추정치 ➔ **(개정안)** 해당·**다음**연도 추정치 ◦ 지방세지출보고서 보고대상 확대 **(현행)** 지방의회 ➔ **(개정안)** 지방의회·**행안부장관**
지방세지출예산서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지출보고서 취합 ➔ **지방세지출예산서** 작성 후 **국회** 제출

373)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임.

374)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947호, 2025.02.06.발의)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추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의2에 따른 지방세지출예산서

현재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지방의회에만 제출되어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지출규모 실적 및 추정치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한 지방세 제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지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 지방세 특례제도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지방세지출예산서가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사항을 담게 되므로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범위를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써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하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75)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의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375)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947호, 2025.02.06. 발의, 2025.04.14. 2025.4.14. 기준 기획재정위원회 미상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0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의2에 따른 지방세지출예산서

둘째, 현행 「지방자치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지방세지출보고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지방세지출예산서의 제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또는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 체계에 의하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지방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 시기가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시기보다 이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지방세지출예산서 제출 흐름>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7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의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지출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넷째, 부칙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377]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적용례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376)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77) **「법률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지출은 국세 지출과 달리 개별 지자체의 부동산 경기, 지역 경제 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경제지표의 일률적 반영이 곤란하여 다음연도 추정치의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이 없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으며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